

연구보고서 2004-25

기초보장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소득활동관련 실태 및 문제점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빈곤예방뿐만 아니라 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울 수 있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자활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현재 자활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빈곤탈피 즉, 완전자활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활사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활환경을 만들기에는 교육수준, 기술수준, 연령, 건강수준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활참여자들이 사업내 정채되지 않고 완전한 자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계층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한 계층과 참여하지 않은 계층을 구분하여 각 계층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본 것이다.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계층과 자활사업을 통해 생계보조를 받는 계층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급여삭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한 계층은 여성 보다는 남성이며, 교육수준도 참여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술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다각적인 비교분석에 의하면 조건부수급자 중에서도 자활사업보다는 조건이 좋은 소득활동을 위해 급여삭감을 감수한다는 것은 자활사업의 확실적인 급여지급 보다는 더 노력하여 보다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가 시사하는 점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력에 의해 차등적으로 급여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과 급여수준이 생계급여를 한도로 정해지는 문제점이 해결돼야만 자활사업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3
제1절 조사 일반사항	13
제2절 표본 추출	14
제3절 근로능력자용 조사	17
제2장 수급 근로능력가구의 실태 및 문제점	21
제1절 가구의 일반사항	21
제2절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26
제3절 급여의 신청 및 전달체계	40
제3장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소득활동 실태 및 문제점	47
제1절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일반적 특성	47
제2절 취업 경험 및 희망	51
제3절 자활지원기관과의 상담	62
제4절 자활사업참여자	65
제5절 임금근로자	75
제6절 비임금근로	78
제7절 실업 및 비경제활동가구원	80

제4장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	81
제1절 분석 일반사항	81
제2절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의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86
제3절 자활사업 참여결정 요인분석 및 불참자의 민간시장소득 추정분석 ·	95
제5장 결 론	106

표 목 차

〈표 1〉 표본지역	15
〈표 2〉 시도별 표본조사완료 가구 분포	15
〈표 3〉 시도별 표본조사완료 응답자 분포	16
〈표 4〉 都·農지역별 조사응답자 분포	16
〈표 5〉 근로능력가구 및 근로능력자 조사완료 수	18
〈표 6〉 경제활동별 조사대상자 수	20
〈표 7〉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수급유형	21
〈표 8〉 수급유형별 근로능력자의 수 및 비율	22
〈표 9〉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수	23
〈표 10〉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연령	23
〈표 11〉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교육수준	24
〈표 12〉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혼인상태	25
〈표 13〉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자들의 취업상태	25
〈표 14〉 수급가구의 장애인현황(근로능력자)	26
〈표 15〉 근로능력자 수급가구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	27
〈표 16〉 월평균 순 가구소득액 (2002년~2003년)	28
〈표 17〉 월평균 정부지원금액 (2002년~2003년)	29
〈표 18〉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기관의 보조 여부 및 보조금액	30
〈표 19〉 수급가구 근로능력자 경제활동별 월평균 소득	31
〈표 20〉 연령계층별 월평균 소득액(2003년 4~6월)	31
〈표 21〉 지역별 월평균 소득액(2003년 4~6월)	32
〈표 22〉 성별 월평균 소득액(2003년 4~6월)	32

〈표 23〉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	33
〈표 24〉	지난 1년간 월평균 지출액	33
〈표 25〉	현재 거주하는 주택 상태	34
〈표 26〉	주거형태	35
〈표 27〉	자가주택 관련 사항	35
〈표 28〉	컴퓨터 관련 사항	36
〈표 29〉	미납한 공과금(중복응답)	37
〈표 30〉	국민연금 가입여부	37
〈표 31〉	국민연금 3개월 이상 체납경험	38
〈표 32〉	가구의 부채유무 및 원인·출처	39
〈표 33〉	부채 및 이자의 상황상태	40
〈표 34〉	신용불량자 가구원의 유무	40
〈표 35〉	급여신청	41
〈표 36〉	민원신청 경험 유무, 내용 및 만족도	43
〈표 37〉	선정급여 이외의 사안에 대한 상담	44
〈표 3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질문 내용	45
〈표 39〉	보충급여방식의 근로유인상의 문제	46
〈표 40〉	근로능력자들의 가족 내 관계	47
〈표 41〉	활동별 근로능력자의 특성	49
〈표 42〉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도·농 지역별 일반특성	50
〈표 43〉	과거 사업경영 또는 고용근로 경험	51
〈표 44〉	과거 구직경험 여부	51
〈표 45〉	근로조건 열악성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	52
〈표 46〉	낮은 임금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	52
〈표 47〉	구직자의 조건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	53
〈표 48〉	건강 및 가구상태 등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	55

〈표 49〉 정보부족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56
〈표 50〉 일자리가 주어져도 취업(이직)할 수 없는 이유	57
〈표 51〉 직업기술 보유정도	57
〈표 52〉 구직(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업종	58
〈표 53〉 구직(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직종	59
〈표 54〉 창업의 희망업종	60
〈표 55〉 창업의 희망직종	60
〈표 56〉 창업준비 경험 및 어려움	61
〈표 57〉 창업 희망형태	61
〈표 58〉 근로유형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상담경험	62
〈표 59〉 지난 1년간의 상담횟수	63
〈표 60〉 일자리 및 창업관련 상담여부	63
〈표 61〉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의 자활사업참여 상담여부	64
〈표 62〉 후견기관 및 고용센터와의 상담의 자활에의 도움여부 및 정도	64
〈표 63〉 자활사업참여자 월평균소득	65
〈표 64〉 자활사업 참여이유	66
〈표 65〉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상태별 임금구분	66
〈표 66〉 자활사업 불참자의 취업상태별 임금구분	67
〈표 67〉 자활사업 불참자의 성별·지역별 1년간 월평균 소득과 지출	67
〈표 68〉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지역별 1년간 월평균 소득과 지출	67
〈표 69〉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경험	68
〈표 70〉 성별 자활사업 참여경험	69
〈표 71〉 지역별 자활사업 참여경험	69
〈표 72〉 자활사업참여에 따른 성취감	70
〈표 73〉 자활사업참여 중단사유	70
〈표 74〉 성별 자활사업참여 중단사유	71

〈표 75〉	연령계층별 자활사업중단사유	72
〈표 76〉	지역별 자활사업중단사유	73
〈표 77〉	참여 못할 때의 이유	73
〈표 78〉	희망하는 자활사업유형	74
〈표 79〉	임금근로자의 임금형태	75
〈표 80〉	시간제 근로 희망여부	76
〈표 81〉	시간제 희망의 구체적 이유	76
〈표 82〉	임금근로 경험자의 실직사유	77
〈표 83〉	실직시 생계수단	77
〈표 84〉	실직시 필요사항 우선 순위	78
〈표 85〉	사업상의 어려움	79
〈표 86〉	사업중단시 필요한 지원	79
〈표 87〉	실업 및 비경제활동가구원의 생계유지수단	80
〈표 88〉	조사구 대분류	87
〈표 89〉	조사대상자 성별	87
〈표 90〉	조사대상자 가구원수	88
〈표 91〉	조사대상자 연령분포	89
〈표 92〉	조사대상자 교육수준	89
〈표 93〉	조사대상자 취업상태	90
〈표 94〉	취업형태별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91
〈표 95〉	지난 1년간 가구 월평균소득	92
〈표 96〉	한 달간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	92
〈표 97〉	지난 1년간 월평균 지출액	93
〈표 98〉	가구 부채규모	94
〈표 99〉	보충급여방식 근로유인	95
〈표 100〉	분석대상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206명 전체)	96

〈표 101〉	자활참여자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82명)	98
〈표 102〉	자활불참자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71가구)	99
〈표 103〉	자활참여 결정요인 Probit 추정식	100
〈표 104〉	자활사업 불참자의 민간소득 추정식	102
〈표 105〉	Heckman 2-step model 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민간시장 소득추정식	104
〈표 106〉	조건부수급자의 민간시장 소득추정치	105

Abstract

The analysis on the motives to encourage participating in the public self-reliance program

The main theme of the article is to figure out motives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self-reliance program among conditional beneficiaries of the public assistance. The conditional beneficiarie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to receive cash and in-kind benefit from government. If one fails to participate his share of cash benefit is to be reduced but rest of family members are allowed to receive cash and in-kind benefit.

The article analyses difference in socio-economic environment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self-reliance program. The success of the self-reliance program depends on the recruiting active participants who are physically fit and has experience in private sector employment. The result shows that relatively more qualifying recipients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self-reliance program.

Women compared to men and those who are less skilled are also more likely to be found in the participating group. The interesting finding is that on average non-participating group has 30% higher income than non-participating group. Based on the analysis, we concluded that recipients who could earn more income by participating in private labor market than participating public self-reliance program do not participate in the public self-reliance program. The result implies that public self-reliance program should adopt program that could pay salaries by performance basis rather than fixed amount per person.

제 1 장 조사개요

제 1 절 조사 일반사항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본고는 특히 근로능력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 1) 전체조사는 12개 시·도, 24개 시·군·구, 48개 읍·면·동 1800가구이다.
- 2) 가구의 종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00가구이며, 근로능력가구 600가구, 근로무능력가구 700가구이다(중도탈락자 300가구, 신청탈락자 200가구). 이 중 본고는 근로능력가구 600가구에 대한 것이다.

3. 조사방법

해당 읍·면·동에서 표본 추출된 가구에 대하여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 조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4. 조사기간: 2003. 9~10월.

제 2 절 표본 추출

1. 표본지역 추출방법

- 1) 전국을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 2) 대도시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개의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으로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도의 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의 군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2. 표본추출 단계

- 1단계: 1차 표본추출 단위로서 전국 대도시 7개중에서 4개의 도시를 선정하고, 전국 도 9개중에서 8개의 도를 선정하였다.
- 2단계: 대도시에서 선정된 4곳에서 각각 2개의 구를 선정하고, 선택된 8개의 도에서 중소도시지역으로, 도의 시 각 한 곳, 농어촌 지역으로 각 도의 군을 한 곳씩 선정하였다.
- 3단계: 이렇게 하여 지정된 12개의 시·군·구에서 각각 2개의 읍·면·동을 추출하여, 총12개 시·도, 24개 시·군·구, 24개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단, 읍·면·동 수가 부족할 경우 다른 시·군·구를 다시 추출하였고,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제외하였다.

3. 표본지역

<표 1> 표본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강북구 미아9동	경기 안성시 안성2동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서울 강북구 번2동	경기 안성시 안성3동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서울 송파구 문정1동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서울 송파구 잠실3동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충북 괴산군 연풍면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충북 괴산군 불정면
부산 금정구 서3동	전북 정읍시 장명동	전북 무주군 안성면
부산 금정구 부곡1동	전북 정읍시 연지동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구 서구 평리2동	전남 나주시 영강동	경북 울진군 기성면
대구 서구 평리3동	전남 나주시 성북동	경북 울진군 후포면
대구 북구 동침산2동	경북 영천시 서부동	경남 고성군 양현면
대구 북구 동침산3동	경북 영천시 월영동	경남 고성군 거류면
광주 서구 양3동	경남 마산시 월영2동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광주 서구 서창동	경남 마산시 영덕2동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제주도 서귀포시 대천동	전남 보성군 검백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전남 보성군 복내면

4. 시도별 표본조사완료 가구 분포

<표 2> 시도별 표본조사완료 가구 분포

(단위: 개, %)

시·도	조사가구	비율
서울특별시	42	8.2
부산광역시	47	9.2
대구광역시	47	9.2
광주광역시	34	6.6
경기도	46	9.0
강원도	44	8.6
충청북도	49	9.6
전라북도	44	8.6
전라남도	41	8.0
경상북도	47	9.2
경상남도	38	7.4
제주도	33	6.4
계	512	100.0

주: 인천·대전·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표본에서 제외됨.

5. 지역규모별 표본조사완료 응답자 분포

〈표 3〉 시도별 표본조사완료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시·도	조사구	비율
서울특별시	53	8.0
부산광역시	65	9.8
대구광역시	61	9.2
광주광역시	44	6.6
경기도	61	9.2
강원도	55	8.3
충청북도	70	10.6
전라북도	61	9.2
전라남도	53	8.0
경상북도	57	8.6
경상남도	42	6.3
제주도	40	6.0
계	667	100.0

주: 인천·대전·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표본에서 제외됨.

〈표 4〉 도·농지역별 조사응답자 분포

(단위: 명, %)

시·도	조사구	비율
광역시의 동	223	33.7
기타시의 동	243	36.7
군의 읍	24	3.6
군의 면	172	26.0
계	667	100.0

6. 표본가구 추출의 구체적 절차

- 1) 각 읍·면·동으로부터 사전에 수급가구 및 중도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의 명단을 받았다.

2) 이 명단을 기초로 하여 수급자 가구 1,300(근로능력가구 600, 근로무능력가구 700), 신청탈락 200가구, 자연(중도)탈락자 약 300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3 절 근로능력자용 조사

1. 조사 목적

이 조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가구원 조사중 근로능력자 및 그 가구에 대한 심층조사이다. 특히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2. 조사 내용

1) 근로능력가구 중 “근로능력유무” 문항에서(수급자용 10번 문항)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근로능력유무의 판정은 가구원의 여건을 보고 조사원이 직접 판단한다.

근로능력판정: 18세 이상 62세 이하(1941년~1985년)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모두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중증장애인(1~4급),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만성질환자, 출산 전 3개월 임신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3. 조사 방법(600근로능력가구)

1)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그 가구는 근로능력가구로 분류되며, 사전에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근로능력가구의 명단을 받았다.

- 2) 근로능력가구의 명단 중에서 각 읍·면·동별로 13가구씩 추출하였다.
- 3) 조사원이 직접 근로능력가구를 방문하여 수급가구용 조사표를 작성하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 가구원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자용 조사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 4) 근로능력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2명일 경우에는 그 2명의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자용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4. 조사완료수

〈표 5〉 근로능력가구 및 근로능력자 조사완료 수

	조사구		가구	가구원
	번호	소재지		
서울·경기	11	서울 강북구 미아9동	11	13
	12	서울 강북구 번2동	20	30
	13	서울 송파구 문정1동	10	10
	14	서울 송파구 오륜동	1	1
	15	경기 안성시 안성2동	12	15
	16	경기 안성시 안성3동	13	20
	17	경기 양주군 회천읍	11	13
	18	경기 양주군 은현면	9	14
부산·경남	21	부산 동래구 온천2동		
	22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	20
	23	부산 금정구 서3동	16	23
	24	부산 금정구 부곡1동	16	22
	25	경남 마산시 월영동	11	13
	26	경남 마산시 양덕2동	13	14
	27	경남 고성군 영현면	12	14
28	경남 고성군 거류면	2	2	
대구·경북	31	대구 서구 평리2동	13	18
	32	대구 서구 평리3동	10	12
	33	대구 북구 침산2동	12	17
	34	대구 북구 동천동	11	14
	35	경북 영천시 동부동	13	18
	36	경북 영천시 서부동	13	13
	37	경북 울진군 기성면	13	15
	38	경북 울진군 후포면	9	12

〈표 5〉 계속

		조사구	가구	가구원
광주·제주	41	광주 서구 양3동	9	14
	42	광주 서구 서창동	7	8
	43	광주 광산구 송정1동	9	10
	44	광주 광산구 우산동	9	12
	45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11	16
	46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7	7
	47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10	12
	48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5	5
강원·충북	51	강원 원주시 우산동	16	20
	52	강원 원주시 봉산동	13	15
	53	강원 홍천군 화촌면	6	7
	54	강원 홍천군 남면	9	13
	55	충북 괴산군 연풍면	13	18
	56	충북 괴산군 불령면	13	20
	57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2	16
	58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12	17
전북·전남	61	전북 무주군 안성면	12	17
	62	전북 무주군 부남면	11	14
	63	전북 정읍시 시기동	11	13
	64	전북 정읍시 연지동	11	20
	65	전남 나주시 영강동	10	11
	66	전남 나주시 성북동	12	18
	67	전남 보성군 결백면	9	12
	68	전남 보성군 복내면	10	12
합계			247	327

5. 조사표의 구성

1) 근로능력자 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1) 자활사업참여자
- (2) 임금근로자
- (3) 非임금근로자
- (4) 실업 및 非경제활동가구원, 조건부과 제외·유예 가구원

2) 근로능력자용 조사표는 위의 4개 범주의 공통문항과 각각의 고유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 경제 활동별 조사대상수

〈표 6〉 경제 활동별 조사대상자 수

구 분	대상자수
자활사업참여자	108
임금근로자	285
非임금근로자(자영업)	88
실업 및 非경제활동인구	188

제 2 장 수급 근로능력가구의 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가구의 일반사항

1. 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유형

전체조사 완료한 수급가구 중 본고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가구는 근로능력자 667명을 포함하고 있는 512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형은 일반수급가구가 336가구(65.6%)이며, 조건부 수급가구가 152가구(29.7%)이고, 특례수급가구가 24가구(4.7%)이다(표 7 참조).

〈표 7〉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수급유형

(단위: 가구, %)

구분	응답가구 (비율)
일반수급가구	336 (65.6)
조건부수급가구	152 (29.7)
특례수급가구	24 (4.7)
계	51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2003년 9~10월)결과 집계Data(이하 동일).

이를 근로능력자별로 살펴보면, 전체 667명 중 일반수급 336가구(65.6%)가 427명(64.0%)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 152가구(29.7%)가 209명(31.3%)을 포함하고 있고, 특례수급 24가구(4.7%)가 31명(4.6%)을 포함하고 있다(표 8 참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는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부 수급가구가

다른 유형의 가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구비율(29.7%)에 비해서 많은 근로능력자(31.3%)를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8〉 수급유형별 근로능력자의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일반 수급가구원	427	64.0
조건부 수급가구원	209	31.3
특례 수급가구원	31	4.6
계	667	100.0

2. 가구원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로서 제일 먼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기초보장 수급가구 수준의 어려운 가구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1인(단독) 가구 또는 가구원 규모가 적은 가구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게 하는 바, 그 중 대표적인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가구원 중에 어느 한사람이 큰 질병에 걸린다거나 하였을 때 등이다. 그러한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매우 어려운 경제활동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표 9〉에는 표본 조사한 수급가구들의 가구원의 수 및 비율이 나타나 있다. 거기에는 1인 즉 단독가구가 9.8%이며, 2인 가구가 21.3%나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3인가구가 32.0% 등으로 나타나 있다(4인 이상은 모두 합하여 36.9%에 불과). 이것은 이러한 결혼가구 등 가구원 수가 적은 사실은 이로 인하여 빈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상정하게 한다.

<표 9>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가구원수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1인 가구	50 (9.8)
2인 가구	109 (21.3)
3인 가구	164 (32.0)
4인 가구	125 (24.4)
5인 가구	41 (8.0)
6인 가구	17 (3.3)
7인 이상 가구	6 (1.2)
계	512 (100.0)

3. 연령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연령분포는 40~49세가 39.9%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50~59세 및 30~39세로 각각 17.5%, 17.1%이며, 20~29세도 15.0%로 비교적 많다(나머지 60~69세가 5.7%, 19세가 4.5%, 70세 이상은 0.3%에 불과)(표 10 참조). 이러한 사실은 본고는 전체 수급가구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10>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연령

(단위: 명, %)

구분	빈도
19세	30 (4.5)
20~29세	100 (15.0)
30~39세	114 (17.1)
40~49세	266 (39.9)
50~59세	117 (17.5)
60~69세	38 (5.7)
70세 이상	2 (0.3)
계	667 (100.0)

4.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교육수준

수급가구 가구원들은 근로능력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수준은 낮은 경우가 많다. <표 11> 을 보면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학력은 무학이 7.9%, 초등학교 졸업(또는 중퇴)자가 30.7%나 되며, 중학교 졸업(또는 중퇴)자가 18.9% 등이다(고등학교 이상은 모두 합쳐 42.4%). 이것은 학력과 소득수준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 11>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교육수준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무학	53	7.9
초등학교	205	30.7
중학교	126	18.9
고등학교	214	32.1
전문대	32	4.8
대학교	37	5.5
계	667	100.0

주: 각급 학교 졸업, 중퇴, 수료자 포함.

5.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혼인상태

수급가구들이 소규모 가구가 된 중요한 원인 중에는 부부 중 한 명을 사별하였거나 이혼, 별거 등이 이루어져 결손가정이 된 경우가 많다. <표 12> 는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혼인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 표에는 가구주가 사별한 상태가 16.0%이고, 이혼한 상태가 19.3%나 되며, 별거상태가 3.7%에 이르고 있다(미혼 20.4%, 有배우자 39.9%). 이것은 이러한 가정문제와 그로 인한 가구원수 축소 등은 빈곤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12〉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혼인상태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미혼	136	20.4
有배우	266	39.9
이혼	129	19.3
사별	107	16.0
별거	25	3.7
非해당	4	0.6
계	667	100.0

6.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취업상태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취업상태를 살펴보자. 실업자(구직활동 중) 8.1%이 외에, 취업해 있는 경우의 취업유형을 살펴보면 (표 13 참조), 상시고용은 4.3%에 불과하고, 임시고용 8.5%, 日傭직 30.0%,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가 15.6%, 무급가족종사자 1.2% 등인 바, 열악한 조건의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자영업은 11.7%).

〈표 13〉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자들의 취업상태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상시고용	29	4.3
임시고용	57	8.5
日傭직	200	30.0
자영업	78	11.7
무급가족종사자	8	1.2
실업자(구직활동 중)	54	8.1
非경제활동인구	137	20.5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104	15.6
계	667	100.0

7. 수급가구의 장애인근로능력자 현황

수급가구 근로능력자 중 장애인은 전체 근로능력자 중 등록장애인 3급이 0.1%, 4급이 1.2%, 5급이 1.5%, 7급이 2.1% 등을 차지하여 3급에서 7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합하면 4.9%이고, 비등록 장애인이 1.5%이다(重症 장애인은 근로능력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표에는 집계되지 않음). 이들을 모두 합하면 6.4%에 이른다(나머지 93.6%는 일반인)(표 14 참조). 이들에게는 취업이나 자영업의 운영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

〈표 14〉 수급가구의 장애인현황(근로능력자)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3급 장애인	1	0.1
4급 장애인	8	1.2
5급 장애인	10	1.5
7급 장애인	14	2.1
비등록 장애인	10	1.5
비해당(일반인)	624	93.6
계	667	100.0

주: 重症장애인은 근로 무능력자로 분류하여 본고 분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4급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포함하기도 하나 이 표에서는 이들도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음.

제 2 절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1. 근로능력자 수급가구의 소득

근로능력자 수급가구들의 소득을 살펴보면(표 15 참조), 지난 1년간 월평균(총)소득이 30만원 미만인 5.7%이며, 30~59만원이 21.3%이고, 60~89만원이 가장 많은 35.4%이며, 90~119만원이 23.6%이다(120만원이상은 14.1%에 불과). 이 금액은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근로능력자(1~2인)를 가진 수급가구의

전체의 월평균 (총)소득은 81.8만원으로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낮은 소득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5〉 근로능력자 수급가구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평균
30만원 미만	29 (5.7)	81.8 만원
30~59만원	109 (21.3)	
60~89만원	181 (35.4)	
90~119만원	121 (23.6)	
120~149만원	52 (10.2)	
150~199만원	12 (2.3)	
200만원 이상	8 (1.6)	
계	512 (100.0)	

주: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총소득임.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수급자가구의 월평균 순 가구소득액은 52.3만원 내지 55.2만원 수준이다(표 16 참조). 그 기간 중에는 동절기인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가 가장 적은 52.3만원이다.

〈표 16〉 월평균 순 가구소득액 (2002년 ~ 2003년)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평균금액
2002년 7~9월	없음	39 (7.6)	54.0 만원
	1~30만원	100 (19.5)	
	31~60만원	198 (38.7)	
	61~90만원	117 (22.9)	
	91~120만원	35 (6.8)	
	121~150만원	14 (2.7)	
	151만원 이상	9 (1.8)	
	계	512 (100.0)	
2002년 10~12월	없음	29 (5.7)	54.5 만원
	1~30만원	106 (20.7)	
	31~60만원	199 (38.9)	
	61~90만원	117 (22.9)	
	91~120만원	40 (7.8)	
	121~150만원	11 (2.1)	
	151만원 이상	10 (2.0)	
	계	512 (100.0)	
2003년 1~3월	없음	34 (6.6)	52.3 만원
	1~30만원	113 (22.1)	
	31~60만원	200 (39.1)	
	61~90만원	107 (20.9)	
	91~120만원	38 (7.4)	
	121~150만원	13 (2.5)	
	151만원 이상	7 (1.4)	
	계	512 (100.0)	
2003년 4~6월	없음	24 (4.7)	55.2 만원
	1~30만원	104 (20.3)	
	31~60만원	207 (40.4)	
	61~90만원	116 (22.7)	
	91~120만원	36 (7.0)	
	121~150만원	16 (3.1)	
	151만원 이상	9 (1.8)	
	계	512 (100.0)	

같은 기간 중의 월평균 정부지원금액은 19.1만원 내지 21.4만원 수준이다(표

17 참조). 위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동절기(2003년 1-3월)에 가장 많은 지원금액 21.4만원 수준을 급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7〉 월평균 정부지원금액 (2002년~2003년)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평균금액
2002년 7~9월	없음	81 (15.8)	19.5 만원
	1~10만원	157 (30.7)	
	11~20만원	92 (18.0)	
	21~30만원	83 (16.2)	
	31~40만원	44 (8.6)	
	41~50만원	29 (5.7)	
	51만원 이상	26 (5.1)	
	계	512 (100.0)	
2002년 10~12월	없음	69 (13.5)	20.0 만원
	1~10만원	167 (32.6)	
	11~20만원	94 (18.4)	
	21~30만원	77 (15.0)	
	31~40만원	41 (8.0)	
	41~50만원	32 (6.3)	
	51만원 이상	32 (6.3)	
	계	512 (100.0)	
2003년 1~3월	없음	49 (9.6)	21.4 만원
	1~10만원	165 (32.2)	
	11~20만원	92 (18.0)	
	21~30만원	90 (17.6)	
	31~40만원	45 (8.8)	
	41~50만원	32 (6.3)	
	51만원 이상	39 (7.6)	
	계	512 (100.0)	
2003년 4~6월	없음	34 (6.6)	19.1 만원
	1~10만원	179 (35.0)	
	11~20만원	97 (18.9)	
	21~30만원	91 (17.8)	
	31~40만원	49 (9.6)	
	41~50만원	29 (5.7)	
	51만원 이상	33 (6.4)	
	계	512 (100.0)	

수급가구들에 대한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기관의 보조 여부 및 보조금액은 보조가 있는 가구가 5.1%에 불과하며, 보조금액도 5.1%의 절반을 초과하는 2.9%의 가구가 1~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그 이상도 모두 합쳐 2.2%)(표 18 참조).

〈표 18〉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기관의 보조 여부 및 보조금액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보조 여부	있다		26 (5.1)
	없다		486 (94.9)
		계	512 (100.0)
금액(월)	없음		486 (94.9)
	1~50만원		15 (2.9)
	51~100만원		6 (1.2)
	101~150만원		1 (0.2)
	151~300만원		3 (0.6)
	301만원 이상		1 (0.2)
			계

이러한 수급가구의 소득을 근로능력자별로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는 30~60만원이 60.4%로 가장 높고(표 19 참조), 임금근로자도 이 수준이 58.4%로 높다.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도 순수익 측면에서 30~60만원의 비율이 높아 40.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의 사람들의 집단은 임금근로자들은 61만원~90만원수준이었으나, 자활사업참여자와 비임금근로자는 30만원 미만으로 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소득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수급가구 근로능력자 경제활동별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전체	자활사업참여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 순수익
30만원 미만	32 (4.8)	36 (34.0)	39 (13.9)	19 (21.6)	30 (34.1)
30~60만원	137 (20.7)	64 (60.4)	164 (58.4)	22 (25.0)	36 (40.9)
61~90만원	222 (33.5)	6 (5.7)	63 (22.4)	14 (15.9)	10 (11.4)
91~120만원	164 (24.8)	-	12 (4.3)	7 (8.0)	7 (8.0)
121~150만원	73 (11.0)	-	2 (0.7)	7 (8.0)	4 (4.5)
151만원 이상	34 (5.1)	-	1 (0.4)	19 (21.6)	1 (1.1)
계	662 (100.0)	106 (100.0)	281 (100.0)	88 (100.0)	88 (100.0)
평균(만원)	86.0	38.2	52.7	157.5	56.9

주: “실업 및 비경제활동가구원” 제외.

연령계층별 월평균 소득액(2003년 4~6월)을 살펴보면, 20~39세는 51~100만원이 제일 많은 43.9%이고(1~50만원은 39.7%), 40~59세는 1~50만원 및 51~100만원 양 소득집단의 비율이 비슷하나 역전되기 시작한다(51~100만원이 42.1%, 1~50만원이 43.2%). 60세 이상의 고령 또는 노령계층이 되면 확연히 1~50만원 소득자의 비율이 높아져 69.2%에 이른다(표 20 참조).

〈표 20〉 연령계층별 월평균 소득액(2003년 4~6월)

(단위: 명, %)

구분	전체	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없음	27 (4.1)	1 (3.4)	10 (4.7)	13 (3.4)	3 (7.7)
1~50만원	291 (44.0)	15 (51.7)	85 (39.7)	164 (43.2)	27 (69.2)
51~100만원	273 (41.2)	11 (37.9)	94 (43.9)	160 (42.1)	8 (20.5)
101~200만원	66 (10.0)	2 (6.9)	22 (10.3)	41 (10.8)	1 (2.6)
201~300만원	4 (0.6)	-	2 (0.9)	2 (0.5)	-
301만원 이상	1 (0.2)	-	1 (0.5)	-	-
계	662 (100.0)	29 (100.0)	214 (100.0)	380 (100.0)	39 (100.0)

월평균 소득액에 있어서(2003년 4~6월), 지역별이나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점이나 특이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표 21, 22 참조).

〈표 21〉 지역별 월평균 소득액(2003년 4~6월)

(단위: 명, %)

구분	전체	광역시의 동	기타시의 읍,동	군의 면
없음	27 (4.1)	10 (4.5)	13 (4.9)	4 (2.3)
1~50만원	291 (44.0)	98 (43.9)	118 (44.2)	75 (43.6)
51~100만원	273 (41.2)	98 (43.9)	109 (40.8)	66 (38.4)
101~200만원	66 (10.0)	12 (5.4)	27 (10.1)	27 (15.7)
201~300만원	4 (0.6)	4 (1.8)	-	-
301만원 이상	1 (0.2)	1 (0.4)	-	-
계	662 (100.0)	223 (100.0)	267 (100.0)	172 (100.0)

〈표 22〉 성별 월평균 소득액(2003년 4~6월)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없음	27 (4.1)	9 (3.8)	18 (4.2)
1~50만원	291 (44.0)	104 (44.3)	187 (43.8)
51~100만원	273 (41.2)	90 (38.3)	183 (42.9)
101~200만원	66 (10.0)	30 (12.8)	36 (8.4)
201~300만원	4 (0.6)	2 (0.9)	2 (0.5)
301만원 이상	1 (0.2)	-	1 (0.2)
계	662 (100.0)	235 (100.0)	427 (100.0)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묻은 질문에 90~119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1.1%), 15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이며(27.0%), 60~89만원이 세 번째이었다(21.9%)(표 23 참조). 평균은 112.7만원이 되는 바, 위의 평균 소득(81.8만원)과는 격차가 크게 있다.

〈표 23〉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평균
30만원 미만	3 (0.6)	112.7 만원
30~59만원	28 (5.5)	
60~89만원	112 (21.9)	
90~119만원	159 (31.1)	
120~149만원	72 (14.1)	
150만원 이상	138 (27.0)	
계	512 (100.0)	

그렇다면 근로능력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급가구들의 실제의 월평균 지출액 수준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60~89만원 수준이 37.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30~59만원이 24.6%, 90~119만원이 24.2% 등이다(표 24 참조). 평균지출액은 78.9만으로서 위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 112.7만에는 크게 못 미친다.

〈표 24〉 지난 1년간 월평균 지출액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평균
30만원 미만	10 (2.0)	78.9 만원
30~59만원	126 (24.6)	
60~89만원	192 (37.5)	
90~119만원	124 (24.2)	
120~149만원	39 (7.6)	
150만원 이상	21 (4.1)	
계	512 (100.0)	

2. 수급가구의 주거, 재산관련 상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상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주택의 면적과 방의 개수 등일 것이다. 주택의 면적은 11~15평이 제일 많은

26.6%이고, 6~10평도 24.4%나 되며, 1~5평도 13.3%인 것을 보면(표 25 참조), 얼마나 열악한 주거상태인지 알 수 있다. 방의 개수도 2개가 56.4%인데 주택전체의 면적이 좁으므로 방의 면적도 클 수는 없다. 특히 그러한 방의 개수가 1개인 가구가 20.1%나 되는 것이 주목된다.

〈표 25〉 현재 거주하는 주택 상태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면적	1~5평	68 (13.3)
	6~10평	125 (24.4)
	11~15평	136 (26.6)
	16~20평	120 (23.4)
	21~25평	37 (7.2)
	26평 이상	26 (5.1)
	계	512 (100.0)
방의 갯수	1개	103 (20.1)
	2개	289 (56.4)
	3개	106 (20.7)
	4개	14 (2.7)
	계	512 (100.0)

그러한 주거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자가는 23.4%에 불과하고, 월세가 38.7%나 된다. 그밖에 전세 16.2%, 무료임차 12.7% 등으로 대체로 매우 열악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6 참조).

〈표 26〉 주거형태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자가	120 (23.4)
전세	83 (16.2)
보증부 월세(임대아파트 포함)	92 (18.0)
월세(사글세 포함)	106 (20.7)
영구 임대아파트(일반 전세 및 월세 제외)	45 (8.8)
무료임차(부분, 전체)	65 (12.7)
기타	1 (0.2)
계	512 (100.0)

자가를 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 자가가구 23.4%중에는 1~99만원 가격 수준의 자가가 1.6%, 100~500만원 수준이 8.4%, 501~1000만원의 자가가 4.5% 등으로서 이들을 합치면 14.5%로서 이러한 소규모가 전체 자가소유의 절반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표 27 참조).

〈표 27〉 자가주택 관련 사항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보유 여부	있다	124 (23.4)
	없다	388 (76.6)
계	512 (100.0)	
가격	없음	388 (76.6)
	1~99만원	8 (1.6)
	100~500만원	43 (8.4)
	501~1000만원	23 (4.5)
	1001~5000만원	45 (8.8)
	5001~1억원	5 (1.0)
계	512 (100.0)	

3. 생활관련 경제상태

컴퓨터가 있는 가구는 54.1%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활용을 할 수 없는 가구가 18.8%에 이른다(표 28 참조). 정보화시대에의 적응 또는 활용상의 문제를 느끼게 한다.

〈표 28〉 컴퓨터 관련 사항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컴퓨터 보유여부	있다	277 (54.1)
	없다	235 (45.9)
계		512 (100.0)
인터넷 가능여부	있다	225 (81.2)
	없다	52 (18.8)
계		277 (100.0)

생활관련 경제상황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과금납부상황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과금납부와 관련하여, 전기료를 미납한 가구가 30.5%나 되고, 전화료 미납가구 29.5%, 월세 미납가구 11.9%, 상하수도료 미납가구 7.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어려운 생활관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표 29 참조).

〈표 29〉 미납한 공과금(중복응답)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월세금	36 (11.9)
임대료	18 (6.0)
관리비	21 (7.0)
난방비	14 (4.6)
전기료	92 (30.5)
상하수도료	21 (7.0)
취사연료비	-
전화료	89 (29.5)
신문구독료	-
기타	11 (3.6)
계	302 (100.0)

수급가구의 경제상황 판단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금(보험료) 납부 상태도 관계될 수 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여부부터 살펴보면, 가입하지 못한 가구가 78.1%나 된다(가입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18.4%에 불과)(표 30 참조).

〈표 30〉 국민연금 가입여부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있다	94 (18.4)
없다	400 (78.1)
현재 수혜중	18 (3.5)
계	512 (100.0)

국민연금 납입금(보험료) 납부상태도 해당자 19.0% 중 거의 1/3에 해당하는 6.1%의 가구가 3개월 이상 체납한 경험이 있다(표 31 참조). 이런 관점에서도 수급가구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1〉 국민연금 3개월 이상 체납경험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비해당	415 (81.1)
있다	31 (6.1)
없다	66 (12.9)
계	512 (100.0)

4. 근로능력 수급가구의 부채

부채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부채유무부터 알아보자(표 32 참조). 부채가 있는 응답자가 총 응답자 중 70.9%나 차지할 정도로 많다(부채 액수 등 관련하여서는 바로 다음에서 별도 표로 다룸).

부채의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식료품비 등 생계비가 28.0%로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것에서도 생활의 어려움 때문으로 인한 것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영업 등 사업자금 명목이 19.4%, 영농자금 6.4%, 병원치료비 등 의료비 10.8%, 전세, 월세 등 주택비 목적이 17.5%, 학자금 6.1% 등도 빈곤 가구 생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채들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부채의 출처는 친구, 친척, 이웃 등 아는 사람이 33.6%로 제일 많고, 농협 등 은행도 33.1%로 비중이 높다. 신용카드 빚도 19.2%나 되며,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이 8.8%이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도 4.7%나 된다.

〈표 32〉 가구의 부채유무 및 원인·출처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부채 유무	있다		363 (70.9)
	없다		149 (29.1)
	계		512 (100.0)
부채 원인	식료품비 등 생계비		101 (28.0)
	병원치료비 등 의료비		39 (10.8)
	학자금 등 교육비		22 (6.1)
	전세금, 월세 등 주택관련자금		63 (17.5)
	자동차 구입		3 (0.8)
	내구재 구입(자동차구 구입 제외)		3 (0.8)
	영농자금		23 (6.4)
	사업자금		70 (19.4)
	부채를 갚기 위해서		9 (2.5)
	결혼 등 관혼상제 비용		2 (0.6)
	기타		26 (7.2)
	계		361(100.0)
부채 조달 출처	친척·친구·이웃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122 (33.6)
	은행(농협 포함)		120 (33.1)
	은행 외 금융기관		32 (8.8)
	신용카드		70 (19.2)
	사채업자		17 (4.7)
	기타		2 (0.6)
계		363(100.0)	

수급가구들의 부채의 상환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들 수급가구들에게는 이러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이 매우 커서, ‘이자는 매달 갚고 있으나,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는 못하고 있다’가 31.7%나 차지한다. ‘이자를 매번 연체 하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도 못하고 있다’도 27.0% 등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부채 때문에 어려운 가계에 더욱 부담이 되고 상태를 읽을 수 있다(표 33 참조).

〈표 33〉 부채 및 이자의 상환상태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이자를 매달 갚고 있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55 (15.2)
이자는 매달 갚고 있으나,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는 못하고 있다	115 (31.7)
이자를 연체 한 적이 있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도 못하고 있다	35 (9.6)
이자를 매번 연체하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도 못하고 있다	98 (27.0)
이자가 없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7 (4.7)
이자가 없고, 원금상환을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	43 (11.8)
계	363 (100.0)

그리고 현재 신용불량자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9.1%가 될 정도로 신용불량상태의 가구비율이 높다(표 34 참조).

〈표 34〉 신용불량자 가구원의 유무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있다	98 (19.1)
없다	414 (80.9)
계	512 (100.0)

제 3 절 급여의 신청 및 전달체계

1. 급여의 신청

급여신청을 한 이유로서 제일 많이 든 것은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서 69.5%이다. 그밖에는 ‘주거비를 지원 받기 위해’가 17.6%, ‘자녀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가 10.0% 등으로서 비교적 높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7%로서 근로능력자(들)가 있는 수급가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매우 낮다(표 35 참조).

〈표 35〉 급여신청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급여신청 이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56 (69.5)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90 (17.6)
	주거비를 지원 받기 위해	1 (0.2)
	자녀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	51 (10.0)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14 (2.7)
	계	512 (100.0)
신청과정에서의 어려움	신청서작성이 복잡함	45 (8.8)
	요구서류가 너무 많음	67 (13.1)
	전담공무원이 불친절함	14 (2.7)
	공공부조를 받는 것에 대한 치욕감이 들었음	92 (18.0)
	기타	8 (1.6)
	잘 모름	285 (55.7)
	무응답	1 (0.2)
	계	512 (100.0)
신청에서 선정까지 소요 기간	10일 미만	11 (2.1)
	10~30일	244 (47.7)
	31~60일	105 (20.5)
	61~90일	68 (13.3)
	91일 이상	84 (16.4)
	계	512 (100.0)
신청에서 선정까지 전담공무원 방문여부	있다	430 (84.0)
	없다	74 (14.5)
	계	504 (100.0)

주: 전담공무원 방문여부 항목에서 무응답 8명 제외.

신청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공공부조를 받는 것에 대한 치욕감이 들었음’이 18.0%나 됨으로서 공공부조가 저리라고 하더라도 대역제도 등이 아닌 무상급여제도라는 사실이 치욕감을 더 들게 하는 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무실이 독립적 사무실로 구성되어 못한 이유로 전담공무원과의 상담이 독립된 상담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과 관련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밖에도 ‘요구서류가 너무 많음’ 13.1%, ‘신청서작성이 복잡함’ 8.8% 등으로 비교적 많이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이다.

신청에서 선정까지 소요기간은 10~30일이 가장 많은 47.7%이고, 31~60일도 20.5%, 91일 이상도 16.4%를 차지함으로써 급히 급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2. 전달체계

수급가구에게 민원신청 경험 유무, 내용 및 만족도를 설문하였다. 먼저 민원신청경험 유무에서 '있다'는 응답가구가 11.9%에 불과하고, '없다'는 가구가 88.1%나 되는 사실이 주목된다(표 36 참조).

다음, 민원신청 경험이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그 신청내용을 설문하였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다른 수급자에 비해 급여가 낮은 것에 대한 불만(보충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39.3%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 선정 기준 중 소득·재산기준 적용에 대한 불만'이 29.5%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이다'와 '매우 불만이다'가 각각 33.4%, 11.5%로서 '대체로 만족이다', '매우 만족이다'의 각각 24.6%, 3.3%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불만이라고 응답한 가구들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었다'가 가장 많은 35.7%이었고,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와 '민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가 각각 17.9%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대답이 지연되었다'와 '불친절하다'도 각각 14.3%, 10.7%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보충급여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도 부족 및 담당공무원들의 수의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된다.

〈표 36〉 민원신청 경험 유무, 내용 및 만족도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경험 유무	있다		61 (11.9)
	없다		451 (88.1)
		계	512 (100.0)
민원신청 내용	수급 신청상의 어려움		6 (9.8)
	수급자 선정 기준 중 소득·재산기준 적용에 대한 불만		18 (29.5)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강화에 대한 불만		1 (1.6)
	현금급여 기준을 최저생계비 전액으로 오해		1 (1.6)
	다른 수급자에 비해 급여가 낮은 것에 대한 불만 (보충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24 (39.3)
	서비스 제공자(전담공무원, 직업상담원, 자활후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불만		3 (4.9)
	기타		8 (13.1)
			계
처리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2 (3.3)
	대체로 만족한다		15 (24.6)
	그저 그렇다		16 (26.2)
	대체로 불만이다		21 (34.4)
	매우 불만이다		7 (11.5)
		계	61 (100.0)
불만족 이유	민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5 (17.9)
	불친절하다		3 (10.7)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5 (17.9)
	대답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10 (35.7)
	대답이 지연되었다		4 (14.3)
	기타		1 (3.6)
		계	28 (100.0)

주: “불만족 부분“ 항목에서 총 응답자 수는 만족도에서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임.

기초보장 선정 및 급여 이외의 사안으로 동사무소 전담공무원과 상담한 적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상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한 가구가 48.4%인데 비해 ‘상담한 적이 없다’는 가구가 51.6%나 됨으로서, 동사무소 전담공무원들의 상담 역할이 이런 사안들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7 참조).

상담한 적이 없는 경우 상담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어서’가 45.5%나 되고, ‘전담공무원이 해결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도 23.9%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및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표 37〉 선정급여 이외의 사안에 대한 상담

		(단위: 명, %)
		구분
		빈도
경험 유무	있다	248 (48.4)
	없다	264 (51.6)
계		512 (100.0)
상담요청을 안한 이유	동사무소가 너무 멀어서	7 (2.7)
	전담공무원이 불친절해서	8 (3.0)
	전담공무원이 너무 바빠서	2 (0.8)
	전담공무원이 해결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63 (23.9)
	사생활이나 비밀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	4 (1.5)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어서	120 (45.5)
	기타	60 (22.7)
	계	264 (100.0)

이어서 수급가구에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 첫째, “담당공무원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3.6%, ‘그렇지 않다’가 30.3% 나옴으로서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하였다(표 38 참조).

둘째, “담당공무원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1.8%, ‘그렇지 않다’가 39.1% 나옴으로서 부정적인 대답이 다소 우세하였다.

셋째, “담당공무원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는 ‘그렇지 않다’가 39.3%인데 비해, ‘그렇다’는 22.3%밖에 안됨으로써 부정적인 쪽이 크게 우세하였다.

〈표 3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질문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담당공무원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 (5.3)
	그렇지 않다	115 (30.3)
	보통이다	94 (18.4)
	그렇다	223 (43.6)
	매우 그렇다	13 (2.5)
	계	512 (100.0)
담당공무원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 (5.5)
	그렇지 않다	200 (39.1)
	보통이다	107 (20.9)
	그렇다	163 (31.8)
	매우 그렇다	14 (2.7)
	계	512 (100.0)
담당공무원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9 (7.6)
	그렇지 않다	201 (39.3)
	보통이다	151 (29.5)
	그렇다	114 (22.3)
	매우 그렇다	7 (1.4)
	계	512 (100.0)
업무에 관해 담당공무원을 신뢰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1.6)
	그렇지 않다	50 (9.8)
	보통이다	175 (34.2)
	그렇다	258 (50.4)
	매우 그렇다	21 (4.1)
	계	512 (100.0)
담당공무원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2.5)
	그렇지 않다	66 (12.9)
	보통이다	188 (36.7)
	그렇다	227 (44.3)
	매우 그렇다	18 (3.5)
	계	512 (100.0)

여기까지의 응답을 종합하면 전담공무원이 수급가구의 큰 문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다양하게 그 가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기대감도 그리 큰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 “업무에 관해 담당공무원을 신뢰한다” 및 “담당공무원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등의 항목에서는 양쪽 모두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50.4%, 44.3%로 비교적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3. 보충급여방식의 근로유인상의 문제점

수급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지급은 기본적으로 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부분을 보충하여 급여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이로 인하여 근로유인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수급가구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표 39 참조). 이에 관한 질문은 ‘일을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정부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 지원금액이 많아져, 결국 귀 가구가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이 같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이었다.

〈표 39〉 보충급여방식의 근로유인상의 문제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	45	6.7
하고 있는 일을 줄이겠다	10	1.5
현재 수준으로 일하겠다	224	33.6
하고 있는 일을 늘리겠다	112	16.8
일이 더 주어지면 하겠다	275	41.2
기타	1	0.1
계	667	100.0

이에 대한 대답은 ‘일이 더 주어지면 하겠다’가 41.2%, ‘하고 있는 일을 늘리겠다’도 16.8%이었지만, ‘현재 수준으로 일하겠다’가 33.6%나 되며,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와 ‘하고 있는 일을 줄이겠다’도 각각 6.7%,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실은 현행의 보충급여제도가 근로유인에는 역작용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 3 장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소득활동 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일반적 특성

1.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가족관계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가족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57.1%이고, 배우자가 22.3%, 자녀 18.7%로서 합하면 98.3%가 되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부모, 형제·자매, 손자·손녀, 기타(며느리 등)가 각각 0.1%, 0.3%, 0.6%, 0.7%로서 합하여도 1.7%에 불과하다(표 40 참조).

이것은 수급가구 전체 가구원 중에서도 근로능력자들을 집계한 것이므로 고령계층이나 소년·소녀계층 등은 처음부터 대체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0〉 근로능력자들의 가족 내 관계

(단위: 명, %)

구분	빈도
가구주	381 (57.1)
배우자	149 (22.3)
자녀	125 (18.7)
부모	1 (0.1)
형제·자매	2 (0.3)
손자·손녀	4 (0.6)
기타(며느리 등)	5 (0.7)
계	667 (100.0)

2. 근로능력자의 특성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전체응답자 중 35.2%는 남성이고, 나머지 64.8%는 여성으로서 남성의 두 배에 조금 못 미칠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41 참조). 이것은 주로 한 가구에 여성 근로능력자가 1~2명이 있다하더라도 남성에 비하여 저소득인 경우가 많아 수급가구로 책정(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남성근로자가 1~2명이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급가구의 근로능력자의 비율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별로 성별 구분을 좀더 세분화해 보면, 자활사업참여자의 비율이 여성이 특히 높고(74.5%), 남성은 더욱 낮은 특징(25.5%)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자활사업이 수입은 많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참여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유형의 일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연령계층별 특성은 40~49세가 39.7%로서 가장 많다. 연령계층별로는 50세 이상 고령·노령계층이 되면 자활사업 참여 및 비임금근로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重症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은 근로능력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고의 장애인 만성질환자 조사에는 그 수나 비율이 작다.

<표 41> 활동별 근로능력자의 특성

(단위: 명, %)

응답자특성		전체	자활사업참여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실업 및 비경활
성별	남	235 (35.2)	27 (25.5)	99 (35.2)	42 (47.7)	67 (35.8)
	여	427 (64.8)	79 (74.5)	182 (64.8)	46 (52.3)	120 (64.2)
	계	662 (100.0)	106 (100.0)	281 (100.0)	88 (100.0)	187 (100.0)
연령	10~19세	29 (4.4)	-	3 (1.1)	-	26 (13.9)
	20~29세	100 (15.1)	1 (0.9)	33 (11.7)	4 (4.5)	62 (33.2)
	30~39세	114 (17.2)	10 (9.4)	66 (23.5)	6 (6.8)	32 (17.1)
	40~49세	263 (39.7)	47 (44.3)	131 (46.6)	49 (55.7)	36 (19.3)
	50~59세	117 (17.7)	31 (29.2)	41 (14.6)	21 (23.9)	24 (12.8)
	60~69세	38 (5.7)	17 (16.0)	6 (2.1)	8 (9.1)	7 (3.7)
	70~79세	1 (0.2)	-	1 (0.4)	-	-
계	662 (100.0)	106 (100.0)	281 (100.0)	88 (100.0)	187 (100.0)	
장애인 여부	비장애인	619 (93.5)	101 (95.3)	266 (94.7)	76 (86.4)	176 (94.1)
	등록장애인	33 (5.0)	4 (3.7)	12 (4.3)	10 (11.4)	7 (3.7)
	비등록장애인	10 (1.5)	1 (0.9)	3 (1.1)	2 (2.3)	4 (2.1)
	계	662 (100.0)	106 (100.0)	281 (100.0)	88 (100.0)	187 (100.0)
만성질환 여부	있다	10 (1.5)	3 (2.8)	4 (1.4)	3 (3.4)	-
	없다	650 (98.5)	103 (97.2)	277 (98.6)	84 (96.6)	186 (99.5)
	계	660 (100.0)	106 (100.0)	281 (100.0)	87 (100.0)	186 (100.0)

주: 1) 5명은 Missing 처리됨(이하 동일).

2) 重症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는 근로능력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표에는 非중증자들만 나타나 있는 것임(이하 동일).

3. 도·농 지역별 근로능력자의 특성

도·농 지역별 근로능력자의 특성은 성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연령계층별로는 농어촌이 될수록 高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42 참조). 그러나 학력에 있어서는 반대로 도시가 될수록 高학력층이 많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농·어촌은 기혼·사별이 많고, 도시에서는 이혼이 많다. 이것은 도시에서의 혼인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2〉 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도·농 지역별 일반특성

(단위: 명, %)

응답자특성		전국	대도시 동부	중소도시 동부	읍·면부
성별	남	235 (35.2)	80 (35.7)	75 (30.6)	80 (40.4)
	여	427 (64.8)	143 (64.1)	168 (69.1)	116 (59.6)
계		662 (100.0)	223 (100.0)	243 (100.0)	196 (100.0)
연령	10~19세	29 (4.4)	11 (4.9)	12 (4.9)	6 (3.1)
	20~29세	100 (15.1)	37 (16.6)	45 (18.5)	18 (9.2)
	30~39세	114 (17.2)	43 (19.3)	49 (20.2)	22 (11.2)
	40~49세	263 (39.7)	89 (39.9)	86 (35.0)	89 (45.4)
	50~59세	117 (17.7)	36 (16.1)	40 (16.5)	41 (20.9)
	60~69세	38 (5.7)	7 (3.1)	11 (4.5)	20 (10.2)
	70~79세	1 (0.2)	-	1 (0.4)	-
계		662 (100.0)	223 (100.0)	243 (100.0)	196 (100.0)
학력	무학	52 (7.9)	9 (4.0)	19 (7.8)	24 (12.2)
	초졸	204 (30.8)	53 (23.8)	56 (23.0)	96 (49.0)
	중졸	125 (18.9)	46 (20.6)	48 (19.8)	31 (15.8)
	고졸	212 (32.0)	90 (40.4)	87 (35.8)	35 (17.9)
	전문대졸	32 (4.8)	12 (5.4)	15 (6.2)	5 (2.6)
	대졸	37 (5.6)	13 (5.8)	18 (7.4)	6 (3.1)
	계		662 (100.0)	223 (100.0)	243 (100.0)
혼인상태	비해당	4 (0.6)	2 (0.9)	2 (0.8)	-
	미혼	135 (20.4)	49 (22.0)	59 (24.3)	27 (13.8)
	기혼	264 (39.9)	82 (36.8)	80 (32.9)	102 (52.0)
	이혼	129 (19.5)	51 (22.9)	54 (22.2)	24 (12.2)
	사별	105 (15.9)	32 (13.9)	37 (15.2)	37 (18.9)
	별거	25 (3.8)	8 (3.6)	11 (4.5)	6 (3.1)
계		662 (100.0)	223 (100.0)	243 (100.0)	196 (100.0)
취업상태	상시고용	29 (4.4)	12 (5.4)	11 (4.5)	6 (3.1)
	임시고용	57 (8.6)	21 (9.4)	21 (8.6)	15 (7.7)
	일용직	198 (29.9)	71 (31.8)	71 (29.2)	56 (28.6)
	자영업	77 (11.6)	10 (4.5)	25 (10.3)	42 (21.4)
	무급가족봉사자	8 (1.2)	1 (0.4)	1 (0.4)	6 (3.1)
	실업자(구직활동중)	54 (8.2)	24 (10.8)	20 (8.2)	10 (5.1)
	비경제활동	136 (20.5)	50 (22.4)	61 (25.1)	25 (12.8)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103 (15.6)	34 (15.2)	33 (13.6)	36 (18.4)
계		662 (100.0)	223 (100.0)	243 (100.0)	196 (100.0)

주: 이 표에서는 군의 읍은 농어촌인 읍·면 부에 포함되어 있음.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도시는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용직, 실업자(구직활동 중), 非경제활동인구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어촌은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 2 절 취업 경험 및 희망

1. 취업 경험

과거에 사업경영 또는 고용되어 근로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88.9%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43 참조).

〈표 43〉 과거 사업경영 또는 고용근로 경험

(단위: 명, %)

구분	빈도
있다	592 (88.9)
없다	74 (11.1)
계	666 (100.0)

주: 무응답 1명 제외

2. 구직경험 및 어려움

과거의 구직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는 응답자가 81.2%이었으며, “없다”는 18.7%이었다(표 44 참조).

〈표 44〉 과거 구직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있다	541 (81.2)
없다	125 (18.7)
계	666 (100.0)

주: 1명 무응답자 제외.

구직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근로능력자)들에게 근로조건 열악성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를 질문하였던 바, '그렇지 않다'가 58.9%, '전혀 그렇지 않다'가 5.2% 등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을 하였다(표 45 참조). 이것은 근로에 대한 의지 또는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가 적은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표 45〉 근로조건 열악성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그렇다	14	2.6
그렇다	180	33.3
그렇지 않다	318	58.9
전혀 그렇지 않다	28	5.2
계	540	100.0

낮은 임금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도 '그렇지 않다'가 52.8%, '전혀 그렇지 않다'도 4.6% 등으로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나 한다(표 46 참조).

〈표 46〉 낮은 임금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그렇다	26	4.8
그렇다	204	37.9
그렇지 않다	285	52.8
전혀 그렇지 않다	25	4.6
계	540	100.0

구직자의 조건 중 高연령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그렇다'가 35.9%, '매우 그렇다'도 8.7%이며, '그렇지 않다'가 46.7%이다(표 47 참조). 그런

〈표 47〉 구직자의 조건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고연령	매우 그렇다	47 (8.7)
	그렇다	194 (35.9)
	그렇지 않다	252 (46.7)
	전혀 그렇지 않다	47 (8.7)
	계	540 (100.0)
성차별	매우 그렇다	3 (0.6)
	그렇다	46 (8.5)
	그렇지 않다	392 (72.6)
	전혀 그렇지 않다	99 (18.3)
	계	540 (100.0)
낮은 학력	매우 그렇다	45 (8.3)
	그렇다	181 (33.6)
	그렇지 않다	265 (49.2)
	전혀 그렇지 않다	48 (8.9)
	계	539 (100.0)
기술부족	매우 그렇다	46 (8.5)
	그렇다	223 (41.3)
	그렇지 않다	224 (41.5)
	전혀 그렇지 않다	47 (8.7)
	계	540 (100.0)
경력부족	매우 그렇다	37 (6.9)
	그렇다	211 (39.1)
	그렇지 않다	252 (46.7)
	전혀 그렇지 않다	40 (7.4)
	계	540 (100.0)

데 조사응답자 중 많은 사람은 高연령층이 아니므로 이들에게는 高연령이 당연히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 문제된다는 응답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성차별로 인한 것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도 9.1%로서 성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다소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성차별이 심하였던 과거보다는 완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낮은 학력으로 인한 어려움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면 41.9%로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부족 때문도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하면 49.8%로서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경력부족도 두 가지 경우를 합하면 46.0%로서 유사한 수준이다.

건강 및 가구상태 등의 문제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 중 먼저 건강문제로 인한 어려움 여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면 52.3%로서 높다고 볼 수 있다(표 48 참조).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의 높음 때문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하면 80.2%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근로조건 열악성’이나 ‘낮은 임금’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일과 보육문제 때문에 구직의 어려움을 표시한 경우는 양 부문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면 30%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작은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간병 때문에도 이 두 가지 응답을 합하면 19.3%로서 이것도 작은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는 이 두 가지 응답을 모두 합하여도 4.7%에 불과해, 가족반대 때문에 구직의 어려움을 표한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 때문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면 55.0%로서 절반을 상회하는 응답자가 이를 구직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최근 수년간 불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일자리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겠다.

〈표 48〉 건강 및 가구상태 등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건강문제	매우 그렇다	104 (19.3)
	그렇다	178 (33.0)
	그렇지 않다	182 (33.7)
	전혀그렇지않다	76 (14.1)
	계	540 (100.0)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의 높음	매우 그렇다	6 (1.1)
	그렇다	99 (18.3)
	그렇지 않다	334 (61.9)
	전혀그렇지않다	101 (18.7)
	계	540 (100.0)
가사일 때문	매우 그렇다	29 (5.4)
	그렇다	122 (22.6)
	그렇지 않다	228 (42.2)
	전혀그렇지않다	161 (29.8)
	계	539 (100.0)
보육문제 때문에	매우 그렇다	46 (8.5)
	그렇다	118 (21.9)
	그렇지 않다	192 (35.6)
	전혀그렇지않다	183 (34.0)
	계	539 (100.0)
간병	매우 그렇다	27 (5.0)
	그렇다	77 (14.3)
	그렇지 않다	233 (43.3)
	전혀그렇지않다	201 (37.4)
	계	538 (100.0)
가족의 반대	매우 그렇다	2 (0.4)
	그렇다	23 (4.3)
	그렇지 않다	235 (43.7)
	전혀그렇지않다	278 (51.7)
	계	538 (100.0)
일자리 부족	매우 그렇다	56 (10.4)
	그렇다	241 (44.6)
	그렇지 않다	204 (37.8)
	전혀그렇지않다	39 (7.2)
	계	540 (100.0)

정보부족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면 54.0%를 차지함으로써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표 49 참조).

〈표 49〉 정보부족으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빈도
정보 부족	매우 그렇다	36 (6.7)
	그렇다	250 (46.3)
	그렇지 않다	218 (40.4)
	전혀 그렇지 않다	36 (6.7)
	계	540 (100.0)

3. 취업여건의 열악성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 중에서는 일자리가 주어져도 가정적 취업여건의 열악성 등 때문에 취업(이직)할 수 없다는 응답자들이 많다. 그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33.5%로 제일 많고, 다음은 학업 및 진학 준비 때문으로 20.3%, 자녀를 돌보기 때문이 17.7%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50 참조). 그밖에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8.9%, 학력 및 기술 등이 부족해서가 5.7%, 가사일 때문이 3.8% 등이다.

이것은 전일 근무보다 시간제를 더 원하는 경우와 이유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볼 수 있다.

〈표 50〉 일자리가 주어져도 취업(이직)할 수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14 (8.9)
학력 및 기술 등이 부족해서	9 (5.7)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4 (2.5)
가사일 때문에	6 (3.8)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28 (17.7)
학업 및 진학준비 때문에	32 (20.3)
건강상의 문제로	53 (33.5)
기타	12 (7.6)
계	158 (100.0)

4. 낮은 기술보유율

수급가구 가구원들은 비록 근로능력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보유정도는 대체로 낮아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를 모두 합쳐도 1.2%밖에 안되고, 산업기사가 3.3%, 기타 공인면허 자격증 소지자가 1.2%, 자격증 없는 기능인도 3.6% 등에 불과하다. 결국 기술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근로능력 가구원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90.8%에 이르고 있다(표 51 참조).

〈표 51〉 직업기술 보유정도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전혀 없음	604	90.8
기술사, 기능장, 기사	7	1.2
산업기사	22	3.3
기타 공인면허 자격증	8	1.2
자격증 없는 기능인	24	3.6
계	665	100.0

이것은 수급가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많이 보유할 수 없었던 점과 전문적 기술을 많이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구경제에 기여하기 어려웠던 사실의 악순환의 또 다른 측면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5. 구직과 창업의 희망업종 및 형태

구직(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업종은 제조업(17.8%), 숙박 및 음식점업(17.5%), 도·소매업(9.4%), 건설업(8.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8.4%) 등의 순서로 많다(표 52 참조).

〈표 52〉 구직(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업종

(단위: 명, %)

구분	빈도
농림·수산·수렵·광업	18 (4.7)
제조업	68 (17.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1.6)
건설업	34 (8.9)
도·소매업	36 (9.4)
숙박 및 음식점업	67 (17.5)
운수업	14 (3.7)
통신업	6 (1.6)
금융 및 보험업	11 (2.9)
부동산 및 임대업	2 (0.5)
사업 서비스업	8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4.2)
교육서비스업	11 (2.9)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13 (3.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 (0.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32 (8.4)
가사 서비스업	14 (3.7)
국제 및 외국기관	1 (0.3)
기타(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23 (6.0)
계	382 (100.0)

주: 비해당 및 무응답자 제외

구직(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직종을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위의 희망업종과 크게 연계되는 직종의 응답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순노무종사자(39.9%), 사무종사자(14.1%), 서비스종사자(1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9%), 판매 종사자(7.3%) 등의 순서로 많이 희망하였다(표 53 참조).

〈표 53〉 구직(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직종

(단위: 명, %)

구분	빈도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0.3)
전문가	11 (2.9)
기술공 및 준전문가	21 (5.5)
사무종사자	54 (14.1)
서비스 종사자	52 (13.6)
판매 종사자	28 (7.3)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8 (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4 (8.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0 (5.2)
단순노무 종사자	153 (39.9)
계	382 (100.0)

주: 비해당 및 무응답자 제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가구원들에게 창업을 할 경우 희망하는 업종을 물어 보았다. 그 결과도 크게는 위의 구직경우와 근접하여, 숙박, 음식점업이 47.6%로서 거의 절반에 이르고, 도·소매업이 27.6%, 서비스업이 11.9% 등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이 많았다(표 54 참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을 보유한 수급자 가구원이 적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표 54〉 창업의 희망업종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농·수렵·임업	2	1.2
제조·건설업	13	7.7
도·소매업	47	27.6
숙박 및 음식점업	81	47.6
운수·통신업	5	3.0
서비스업	20	11.9
기타(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2	1.2
계	170	100.0

창업하는 경우의 희망직종을 물었을 때도 위의 희망업종과 연계되는 응답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55 참조). 즉, 서비스직 종사자가 48.2%, 판매직종사자가 31.2% 등으로서 두 직종을 합하면 거의 80%(79.4%) 수준에 이른다.

〈표 55〉 창업의 희망직종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고위 관리자 등	2	1.2
전문가 및 기술공	9	4.7
서비스 종사자	82	48.2
판매 종사자	53	31.2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2	1.2
기능원·기계조작·조립종사자	13	7.6
단순노무종사자 기타	10	5.9
계	170	100.0

창업준비 경험 및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창업준비 경험이 있는 사람이 23.3%이었다(표 56 참조). 다음 창업준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창업의 어려움을 질문하였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80.0%이었는데, 이 응답자 중에는 ‘자금 부족’을 어려움으로 든 사람이 절대다수인 66.5%나 차지하

였다. 그밖에 ‘업종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 ‘경영자문처 없음’이 각각 4.5%, ‘기술 부족’ 3.2%, ‘마땅한 동업자가 없음’ 0.6% 등을 어려웠던 것으로 제시했다.

〈표 56〉 창업준비 경험 및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빈도
경험유무	있다	155 (23.3)
	없다	511 (76.7)
계		666 (100.0)
어려움	별 어려움 없음	31 (20.0)
	업종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	7 (4.5)
	경영자문처 없음	7 (4.5)
	기술 부족	5 (3.2)
	자금 부족	103 (66.5)
	마땅한 동업자가 없음	1 (0.6)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함	-
	기타	1 (0.6)
계		155 (100.0)

주: 무응답자 1명 제외

희망 창업형태는 개인창업이 90.6%로 절대적으로 많으나, 공동창업도 9.4%나 되는 점이 주목된다(표 57 참조). 이것은 수급자 가구원들은 비록 근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취약한 경우가 많아 독자적으로 창업·경영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희망이 아니고 실제에 있어서는 공동창업·경영이 더 나은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표 57〉 창업 희망형태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개인창업	154	90.6
공동창업	16	9.4
계	170	100.0

제 3 절 자활지원기관과의 상담

1.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상담

수급가구들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역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과의 상담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상담경험여부를 묻은 질문에서 ‘상담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응답자가 거의 40%(39.6%)에 달한 점이 주목된다(표 58 참조). 경제활동유형별로는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의 상담경험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47.7%이었다.

상담방식도 수급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가 76.4%로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는 16.0%에 불과하였다. 경제활동유형별로는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응답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방문상담비율이 비교적 높은 33.2%를 차지하였다.

〈표 58〉 근로유형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상담경험

(단위: 명, %)

응답구분	전체	자활사업참여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실업및비경활
상담경험의 유무					
없다	262(39.6)	27 (25.5)	99 (35.2)	42 (47.7)	67 (35.8)
있다	399(60.3)	79 (74.5)	182 (64.8)	46 (52.3)	120 (64.2)
계	661 (100.0)	106 (100.0)	281 (100.0)	88 (100.0)	187 (100.0)
상담방식					
본인 직접 방문상담	303 (76.4)	-	3 (1.1)	-	26 (13.9)
담당공무원 방문상담	64 (16.0)	1 (0.9)	33 (11.7)	4 (4.5)	62 (33.2)
담당공무원 전화상담(본인)	27 (6.8)	10 (9.4)	66 (23.5)	6 (6.8)	32 (17.1)
담당공무원 전화상담(가족)	2 (0.5)	47 (44.3)	131 (46.6)	49 (55.7)	36 (19.3)
기타	1 (0.3)	31 (29.2)	41 (14.6)	21 (23.9)	24 (12.8)
계	397 (100.0)	106 (100.0)	281 (100.0)	88 (100.0)	187 (100.0)

주: 각각의 항목에서 빈도수는 무응답과 missing data를 제외한 數임.

또 위에서와 같이 상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자에 대하여 지난 1년간의

상담횟수를 물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1회도 상담한 적이 없었다’라는 응답자가 4.5%나 되었고, 1회가 24.7%, 2회가 23.2% 등으로 상담횟수도 매우 적은 경우의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9 참조).

〈표 59〉 지난 1년간의 상담횟수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0	18	4.5
1	99	24.7
2	93	23.2
3	75	18.7
4	38	9.5
5회 이상	78	19.5
계	401	100.0

상담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활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일자리 및 창업관련 상담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그러한 상담은 없었다’라는 응답자비율이 46.6%나 되었다(표 60 참조).

〈표 60〉 일자리 및 창업관련 상담여부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그렇다	214	53.4
아니다	187	46.6
계	401	100.0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수가 아직도 크게 부족하여 수급가구들의 자활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담당공무원들의 상담 등의 역할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와의 상담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의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에 대한 역할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런 기관과의 자활사업참여 상담여부 등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먼저 상담경험에 있어서 출석통보를 받았으나 상담을 못한 경우가 6.6%이고, 출석통보도 못 받고 상담도 없었다는 응답자비율이 77.6%나 되었다(표 61 참조). 양 기관들의 역할이 그리 크지 못했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1〉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의 자활사업참여 상담여부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출석통보 받고 상담함	92	13.8
출석통보 받고 상담 아니함	44	6.6
출석통보 못 받고 상담함	13	2.0
출석통보 못 받고 상담아니함	517	77.6
계	666	100.0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와 상담을 한 응답자들에게 그 상담의 자활에의 도움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도움이 되었다’가 50.5%, ‘매우 도움이 되었다’도 9.5%이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26.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도 13.3%나 되었다(표 62 참조). 후자들의 응답이 주목된다.

〈표 62〉 후견기관 및 고용센터와의 상담의 자활에의 도움여부 및 정도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그렇다	10	9.5
그렇다	53	50.5
그렇지 않다	28	26.7
전혀 그렇지 않다	14	13.3
계	105	100.0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도 대체로 자활 및 취업, 창업경영 등과 관련한 각 부문별 전문가 및 역할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 4 절 자활사업참여자

1. 자활사업 참여 소득 및 참여이유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는 자활사업이다. 이에 참여하는 경우의 소득상태를 살펴보면, 이 정책의 효과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자활사업참여에 의한 월평균소득은 30만원 미만이 34.0%이고, 30~60만원이 60.4%라서 두 수준의 소득자를 합하면 응답자의 94.4%가 된다. 이렇게 많은 비율의 수급자가 6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표 63 참조).

나머지 5.7%도 61~90만원에 불과하며, 전체 응답자의 개인별 월평균소득이 38.2만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존의 자활사업참여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한 수준의 대책은 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63〉 자활사업참여자 월평균소득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30만원 미만	36	34.0
30-60만원	64	60.4
61-90만원	6	5.7
계 (평균: 38.2만원)	106	100.0

이와 관련하여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자활사업 참여이유를 물었다. 응답자 중 77.6%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매우 많은 비율의 수급자들이 수급을 위하여 억지로 참여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밖에 ‘공무원 참여권유’가 10.3%, ‘추가소득 필요’ 및 ‘근로활동 유지’가 각각 4.7%, ‘창업, 취업에의 도움’이 2.8% 등을 나타냈다 (표 64 참조).

〈표 64〉 자활사업 참여이유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생계급여 수급	83	77.6
추가소득 필요	5	4.7
근로활동 유지	5	4.7
창업, 취업에의 도움	3	2.8
공무원 참여권유	11	10.3
계	107	100.0

〈표 65〉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상태별 임금구분

(단위: 명, %)

구분	상시·임시·일용직	자영업	기타
30만원 미만	0 (0.0)	0 (0.0)	10 (9.6)
30~59만원	0 (0.0)	0 (0.0)	38 (36.5)
60~89만원	3 (37.5)	1 (25.0)	35 (33.7)
90~119만원	3 (37.5)	0 (0.0)	16 (15.4)
120~149만원	2 (25.0)	3 (75.0)	3 (2.9)
150만원 이상	0 (0.0)	0 (0.0)	2 (1.9)
평균소득(만원)	100.63	117.25	68.61
계	8 (100.0)	19 (100.0)	104 (100.0)

주: 기타는 무급가족봉사자, 구직활동중인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표 66〉 자활사업 불참자의 취업상태별 임금구분

(단위: 명, %)

구분	상시·임시·일용직	자영업	기타
30만원 미만	2 (3.7)	2 (10.5)	2 (4.0)
30~59만원	8 (14.8)	2 (10.5)	8 (16.0)
60~89만원	13 (24.1)	10 (52.6)	17 (34.0)
90~119만원	19 (35.2)	2 (10.5)	12 (24.0)
120~149만원	4 (7.4)	1 (5.3)	7 (14.0)
150만원 이상	8 (14.8)	2 (10.5)	4 (8.0)
평균소득(만원)	100.04	84.16	93.10
계	54 (100.0)	19 (100.0)	50 (100.0)

주: 기타는 무급가족봉사자, 구직활동중인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표 67〉 자활사업 불참자의 성별·지역별 1년간 월평균 소득과 지출

(단위: 만원)

구분	남자		여자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평균	94.67	84.11	94.35	89.43
서울	134.00	123.33	119.14	128.57
부산	87.38	76.88	96.50	89.00
대구	75.00	38.50	-	-
광주	94.67	82.33	70.00	65.80
기타	86.91	78.09	88.93	79.73
계	55명		69명	

주: 기타는 4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표 68〉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지역별 1년간 월평균 소득과 지출

(단위: 만원)

구분	남자		여자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평균	69.46	67.00	69.93	67.67
서울	90.50	95.00	61.50	70.00
부산	94.50	90.00	70.67	60.38
대구	83.00	12.00	72.00	73.00
광주	76.33	71.00	70.83	64.33
기타	58.15	61.54	70.43	68.70
계	24명		58명	

주: 기타는 4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2. 자활사업 참여 경험 및 성취감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확인한 결과, 19세 및 20세 이상 39세까지의 청장년 계층에서는 현재나 과거 자활사업참여 경험이 없었던 사람비율이 매우 높았다(각각 96.6%, 86.0%). 반대로 40~59세 중·장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계층은 과거에 참여경험이 있거나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많았다(표 69 참조).

이것은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 ‘과거’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참여에 의해서는 충분한 소득이 획득되지 않으므로 일반사회에서 다른 소득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고령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69〉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현재 불참, 과거 참여	62 (9.4)	-	11 (5.1)	46 (12.1)	5 (12.8)
현재 불참, 과거 불참	483 (73.1)	28 (96.6)	184 (86.0)	254 (67.0)	17 (43.6)
현재 참여, 과거 참여 (다른 사업)	20 (3.1)	-	3 (1.4)	13 (3.4)	4 (10.3)
현재 참여, 과거 참여 (같은 사업)	58 (8.8)	1 (3.4)	10 (4.7)	36 (9.5)	11 (28.2)
현재 참여, 과거참여경험 없음	38 (5.7)	-	6 (2.8)	30 (7.9)	2 (5.1)
계	661 (100.0)	29 (100.0)	214 (100.0)	379 (100.0)	39 (100.0)

자활사업 참여경험에 있어서 성별이나 도·농 지역별로 특별한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는다(표 70, 71 참조).

〈표 70〉 성별 자활사업 참여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현재 불참, 과거 참여	62 (9.4)	29 (12.3)	33 (7.7)
현재 불참, 과거 불참	483 (73.1)	174 (74.0)	309 (72.5)
현재 참여, 과거 참여(다른 사업)	20 (3.1)	8 (3.4)	12 (2.8)
현재 참여, 과거 참여(같은 사업)	58 (8.8)	19 (8.1)	39 (9.2)
현재 참여, 과거참여경험 없음	38 (5.7)	5 (2.1)	33 (7.7)
계	661 (100.0)	235 (100.0)	426 (100.0)

〈표 71〉 지역별 자활사업 참여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광역시의 동	기타시의 읍, 동	군의 면
현재 불참, 과거 참여	62 (9.4)	14 (6.3)	26 (9.7)	22 (12.8)
현재 불참, 과거 불참	483 (73.1)	169 (76.1)	205 (76.8)	109 (63.4)
현재 참여, 과거 참여 (다른 사업)	20 (3.1)	7 (3.2)	8 (3.0)	5 (2.9)
현재 참여, 과거 참여 (같은 사업)	58 (8.8)	24 (10.8)	17 (6.4)	17 (9.9)
현재 참여, 과거참여경험 없음	38 (5.7)	8 (3.6)	11 (4.1)	19 (11.0)
계	661 (100.0)	222 (100.0)	267 (100.0)	172 (100.0)

주: 군의 읍은 시에 포함(이하 동일).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가구원들에게 자활사업참여에 따라 성취감을 느끼는지 여부와 정도에 대하여 물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그렇다’가 12.2%, ‘그렇다’도 41.5%이었으나, ‘그렇지 않다’가 41.5%, ‘전혀 그렇지 않다’도 4.9%로 부정적 대답도 많이 나왔다(표 72 참조). 후자의 부정적 대답들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2〉 자활사업참여에 따른 성취감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그렇다	6	12.2
그렇다	26	41.5
그렇지 않다	42	41.5
전혀 그렇지 않다	8	4.9
계	82	100.0

3. 자활사업 참여 중단 및 불참 이유

자활사업참여를 중단한 사유에 대해 응답한 것은 살펴보았다(표 73 참조). ‘자활사업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가 28.1%, ‘신체상 문제로 참여능력이 없어서’가 21.9% 등으로 매우 높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8.3%, ‘거주지역에 사업이 없어서’가 9.4%, ‘적성, 기술, 업종의 불일치’가 6.3% 등이었다.

〈표 73〉 자활사업참여 중단사유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일하기 싫어서	2	2.1
자활사업보다 나은 일자리 찾아	27	28.1
신체상 문제로 참여능력 없어서	21	21.9
보육, 간병으로 인하여	5	5.2
거주지역에 사업이 없어서	9	9.4
센터, 기관으로부터 부적합판정	1	1.0
적성, 기술, 업종의 불일치	6	6.3
고용의 불안정성	8	8.3
학업 및 진학 준비	2	2.1
수급탈락	1	1.0
자활사업기간이 지나서	3	3.1
기타	11	11.5
계	96	100.0

이것도 대체로 기존의 자활사업의 불충분성 및 한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그밖에 ‘보육, 간병으로 인하여’가 5.2%, ‘센터, 기관으

로부터 부적합 판정'이 1.0% 등이었던 바, 이것은 자활사업에도 참여하기 힘든 수급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자활사업참여 중단사유에서 성별 차이여부를 알아보았다(표 74 참조). '자활사업보다 나은 일자리 찾아서'가 남성(18.2%)에 비해 여성의 비율(36.5%)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자활사업보다는 나으나 매우 열악한 수준의 일자리가 더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른 사유들에 의해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표 74〉 성별 자활사업참여 중단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일하기 싫어서	2 (2.1)	2 (4.5)	-
자활사업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27 (28.1)	8 (18.2)	19 (36.5)
신체상 문제로 참여능력 없음	21 (21.9)	9 (20.5)	12 (23.1)
보육, 간병으로 인해	5 (5.2)	3 (6.8)	2 (3.8)
거주지역에 사업 없음	9 (9.4)	4 (9.1)	5 (9.6)
센터,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	1 (1.0)	1 (2.3)	-
적성, 기술, 업종의 불일치	6 (6.3)	2 (4.5)	4 (7.7)
고용의 불안정성	8 (8.3)	3 (6.8)	5 (9.6)
학업 및 진학 준비	2 (2.1)	2 (4.5)	-
기타	11 (11.5)	9 (20.5)	2 (3.8)
수급탈락	1 (1.0)	-	1 (1.9)
자활사업기간이 지나서	3 (3.1)	1 (2.3)	2 (3.8)
계	96 (100.0)	44 (100.0)	52 (100.0)

자활사업중단사유를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그 결과 20~39세 및 40~59세, 60세 이상의 각 연령계층에서 위에서 살펴본 전 연령계층에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표 75 참조). 즉, 여기서도 '자활사업보다 나은 일자리 찾아서' 및 '신체상 문제로 참여능력 없어서'가 대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령

계층별로 특별한 사항 등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 75〉 연령계층별 자활사업중단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일하기 싫어서	2 (2.1)	-	-	2 (2.9)	-
자활사업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27 (28.1)	-	4 (25.0)	18 (25.7)	5 (50.0)
신체상 문제로 참여능력 없음	21 (21.9)	-	3 (18.8)	17 (24.3)	1 (10.0)
보육,간병으로 인해	5 (5.2)	-	1 (6.3)	4 (5.7)	-
거주지역에 사업 없음	9 (9.4)	-	2 (12.5)	6 (8.6)	1 (10.0)
센터,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	1 (1.0)	-	-	-	1 (10.0)
적성, 기술, 업종의 불일치	6 (6.3)	-	2 (12.5)	4 (5.7)	-
고용의 불안정성	8 (8.3)	-	-	8 (11.4)	-
학업 및 진학 준비	2 (2.1)	-	2 (12.5)	-	-
기타	11 (11.5)	-	1 (6.3)	8 (11.4)	2 (20.0)
수급탈락	1 (1.0)	-	1 (6.3)	-	-
자활사업기간이 지나서	3 (3.1)	-	-	3 (4.3)	-
계	96 (100.0)	-	16 (100.0)	70 (100.0)	10 (100.0)

지역별 자활사업 중단사유를 살펴본 결과, ‘자활사업보다 나은 일자리 찾아서’ 및 ‘신체상 문제로 참여능력 없음’ 사유에 의한 것은 농어촌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표 76 참조). 반면에 ‘보육, 간병으로 인해’, ‘거주지역에 사업 없음’ 및 ‘적성, 기술, 업종의 불일치’ 사유 등에 의한 것은 대도시(광역시)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76〉 지역별 자활사업중단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광역시의 동	기타시의 읍, 동	군의 면
일하기 싫어서	2 (2.1)	1 (3.7)	1 (2.6)	-
자활사업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27 (28.1)	5 (18.5)	11 (28.2)	11 (36.7)
신체상 문제로 참여능력 없음	21 (21.9)	5 (18.5)	8 (20.5)	8 (26.7)
보육, 간병으로 인해	5 (5.2)	4 (14.8)	-	1 (3.3)
거주지역에 사업 없음	9 (9.4)	3 (11.1)	4 (10.3)	2 (6.7)
센터,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	1 (1.0)	-	1 (2.6)	-
적성, 기술, 업종의 불일치	6 (6.3)	3 (11.1)	3 (7.7)	-
고용의 불안정성	8 (8.3)	2 (7.4)	5 (12.8)	1 (3.3)
학업 및 진학 준비	2 (2.1)	-	2 (5.1)	-
기타	11 (11.5)	2 (7.4)	3 (7.7)	6 (20.0)
수급탈락	1 (1.0)	1 (3.7)	-	-
자활사업기간이 지나서	3 (3.1)	1 (3.7)	1 (2.6)	1 (3.3)
계	96 (100.0)	27 (100.0)	39 (100.0)	30 (100.0)

평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의 이유를 질문하여 보았다. 그 결과, ‘건강 문제’가 제일 많은 41.1%를 차지하였고, ‘집안 일’도 20.6%나 차지하여, 수급자가구들의 어려운 근로여건을 짐작하게 한다. ‘당일 자활사업 물량이 없어서’도 20.6%나 되는 것에서는 이런 점에서도 자활사업의 부족성 또는 한계를 읽을 수 있게 한다고 하겠다(표 77 참조).

〈표 77〉 참여 못할 때의 이유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건강문제	44	41.1
집안일	22	20.6
당일 사업물량 없어	22	20.6
다른 구직활동	2	1.9
기타	17	15.9
계	107	100.0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일부 수급근로능력자에게는 기존 자활사업이 상당수준 또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의 많은 수급자들에게는 기존의 자활사업으로는 불충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다.

4. 희망 자활사업유형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이 희망하는 자활사업유형은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 취로형이 50.5%로서 가장 많았다(표 78 참조). 취로형은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건강문제 등이 많은 취약계층들로서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유형의 일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는 업그레이드형 20.6%, 자활공동체 8.4%, 창업지원 5.6%, 취업알선 4.7% 등이었다.

〈표 78〉 희망하는 자활사업유형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취로형	54	50.5
업그레이드형	22	20.6
자활공동체	9	8.4
재활프로그램	2	1.9
지역봉사	1	0.9
창업지원	6	5.6
취업알선	5	4.7
기타	8	7.5
계	107	100.0

제 5 절 임금근로자

1. 임금형태

기초보장수급가구 근로능력자중 임금근로자들의 임금형태는 월급제도 35.9%가 되지만, 일당제가 47.0%로 제일 많고, 시간급제도 8.5%나 되며, 연봉계약제는 2.1%밖에 안 된다(표 79 참조). 이것은 이들의 취약한 특성이 이러한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9〉 임금근로자의 임금형태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연봉계약제	6	2.1
월급제	101	35.9
주급제	7	2.5
일당제	132	47.0
시간급제	24	8.5
도급제	5	1.8
실적제	5	1.8
기타	1	0.4
계	281	100.0

2. 시간제 문제

시간제 일을 하는 응답자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 시간제 일을 하는 이유는 ‘전일제 일이 없어서’도 14.6%수준이지만, ‘시간제 근로를 원해서’가 85.4%나 된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표 80 참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대체로 이들의 가정적, 신체적 경제활동 여건이 열악하여 시간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근로능력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0〉 시간제 근로 희망여부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전일제가 없어서 시간제 근로를 원하여	12	14.6
계	70	85.4
	82	100.0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것은 ‘건강 등 개인사정’이 40.8%로 가장 많았고, ‘보육’이 그 다음인 22.5%이었으며, ‘학업, 진학’이 11.3% 등이 중요한 이유이었다. 이 밖에도 ‘가사일’, ‘간병’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각각 7.0%씩 이었다(표 81 참조).

〈표 81〉 시간제 희망의 구체적 이유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가사일	5	7.0
보육	16	22.5
학업, 진학	8	11.3
간병	5	7.0
전일제 구직 어려움	6	8.5
병행 직업	1	1.4
건강 등 개인사정	29	40.8
전일제 필요 없음	1	1.4
계	596	100.0

3. 실직시의 사유, 생계수단 및 지원

임금근로경험자의 실직사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13.4%(해당자 54.9% 구성 중)로 제일 많고, ‘직장이 문을 닫아서’가 7.8%로 두 번째이며, ‘결혼, 육아, 가사 때문에’가 세 번째로 6.5%, 다음이 ‘수입이 적어서’와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로 각각 5.9%, 5.4%이다(표 82 참조).

이러한 사유들도 신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수급가구 가

구원들의 특성과 크거나 작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표 82〉 임금근로 경험자의 실직사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해당	236 (45.1)
수입이 적어서	31 (5.9)
적성에 맞지 않아서	14 (2.7)
인간관계 때문에	8 (1.5)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28 (5.4)
결혼, 육아, 가사 때문에	34 (6.5)
건강이 좋지 않아서	70 (13.4)
해고되어서	5 (1.0)
직장이 문을 닫아서	41 (7.8)
계약기간이 끝나서	18 (3.4)
기타	38 (7.3)
계	523 (100.0)

임금근로 수급자들에게 실직시의 생계수단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대책 없음’이 74.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밖에는 ‘가족, 친지의 도움’이 10.3%, ‘배우자 소득’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이 8.5% 등을 나타냈다(표 83 참조).

〈표 83〉 실직시 생계수단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배우자 소득	24	8.5
가족, 친지 도움	29	10.3
저축	3	1.1
연금, 퇴직금	3	1.1
실업급여	5	1.8
재산을 줄여서	4	1.4
대책 없음	210	74.5
기타	4	1.4
계	282	100.0

실직 시에 지원을 상정한다면 어떤 우선순위로 필요하겠는지 질문하였다. 그것은 ‘생활비 지원’이 6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취업알선’으로 27.7%이었으며, ‘창업지원’도 8.2%로 비교적 높았다(표 84 참조).

〈표 84〉 실직시 필요사항 우선순위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생활비 지원	171	60.6
취업알선·정보제공	78	27.7
직업훈련 및 교육제공	9	3.2
창업지원	23	8.2
기타	1	0.4
계	282	100.0

제 6 절 非임금근로

1. 사업운영의 현황

자영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非임금근로자들에게 사업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금조달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수급자가 36.4%로 가장 많았고, 판매선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한 수급자가 15.9%이었다. 그밖에도 ‘시설 및 설비’와 ‘가사부담 절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2%로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표 85 참조).

이것도 수년 전부터의 장기불황 등으로 인한 내수부족 현상의 결과가 이러한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85〉 사업상의 어려움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각종 인허가	2	2.3
제품개발	2	2.3
시설 및 설비	9	10.2
자금조달	32	36.4
판매선 확보	14	15.9
사업장 부지 확보	3	3.4
인력확보	8	9.1
가사부담 절충	9	10.2
기타	9	10.2
계	88	100.0

2. 사업중단시의 지원

자영업 등 사업경영자들이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필요한 지원도 위의 임금근로자들이 실직 시에 필요한 지원과 거의 유사한 유형의 응답이 나왔다. 즉, 여기서도 ‘생활비 지원’이 가장 높은 70.5%를 차지하였고, ‘창업지원’이 14.8%, ‘취업알선, 정보제공’이 12.5% 등으로 나타났다(표 86 참조).

〈표 86〉 사업중단시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생활비 지원	62	70.5
취업알선, 정보제공	11	12.5
직업훈련, 교육제공	1	1.1
창업지원	13	14.8
기타	1	1.1
계	88	100.0

제 7 절 실업 및 非경제활동가구원

현재 실업이나 非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수급가구원(근로능력자)들의 생활실태와 관련하여서는 그들이 무소득상태에 있으므로 그들의 생계유지수단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바, 그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다른 가구원의 소득’ 및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각각 34.9%로서 제일 많이 나왔고, 그밖에는 배우자 소득 19.4%, 친척 및 이웃의 도움 6.5% 등으로 나타났다(표 87 참조). 그러나 ‘저축액’은 2.2%, ‘연금 및 실업급여’는 1.6% 등에 불과하였다.

〈표 87〉 실업 및 非경제활동가구원의 생계유지수단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배우자 소득	36	19.4
다른 가구원의 소득	65	34.9
친척, 이웃의 도움	12	6.5
저축액	4	2.2
재산 처분	1	0.5
신용카드	-	-
이자, 임대소득	-	-
연금, 실업급여	3	1.6
정부 생계급여 지원	65	34.9
계	186	100.0

주: 무응답 1명 제외

제 4 장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

제 1 절 분석 일반사항

1. 분석 개요

본 분석은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불참자의 특성을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이 두 집단을 구분 짓게 하는 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건부수급자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자활사업이 안고 있는 참여율 저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향후 성공적인 자활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2003 자활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에 대한 설문분석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자활사업 불참자는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낮고, 동거 가구원수가 많으며,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probit model로 추정한 결과 역시 설문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 불참자의 소득 추정식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 가구가 근근히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클수록, 즉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민간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시행상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이전에 의한 최저소득 보장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활역량 강화를 통해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조건부생계급여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적용된 제도라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제도 시행 만 4년째 접어드는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함께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종래의 단순 근로중심 사업으로부터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대상자 관리, 사업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급여체계 등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2003년 9월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비중은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자활사업참여 불이행자는 4,059명에 이르러 효과적인 자활사업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비중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참여 동기유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급여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제도와 통합형 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충급여제도(supplementary benefit system)에서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되므로 수급자가 얻게 되는 실질적인 총소득은 근로활동을 하는 수급자와 기초보장급여에만 의존하는 수급자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되어 근로의욕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의 소득과약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감소를 당하기보다,

아예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민간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로부터 얻는 소득을 축소 또는 은폐할 수도 있다. 통합형 급여방식 역시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통합형 급여방식에서는 만일 수급자의 근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자격을 잃게 될 경우 생계급여만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 혜택도 함께 중지되기 때문에 근로의욕 감소 내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예 자활사업 참여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자활사업 대상자 관리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 면제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상당수가 가구여건 곤란자, 현재 취업자 등 조건부과 제외자로 분류되거나, 또는 도서벽지 거주자 등 조건제시 유예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참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 외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용면에서도 대상자들의 능력과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자활사업참여 동기유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행 자활사업은 자활참여가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강제될 뿐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는 형편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생계급여 이외에 연계 되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더 높은 소득을 원하는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 이렇게 저조한 자활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들어 정부는 자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재구축을 위해 민간전문가, 노동부 합동으로 보건복지부에 ‘자활정책기획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된 개선방안은 결국 자활사업 참여 동기유발을 위한 정책과 함께 그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충급여원칙을 유지하면서 수급자가 빈곤선을 벗어나 자신의 소득수준을 계속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가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도입 같은 재정적 근로유인정책(financial incentive)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불참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주1)}

빈곤층이 공공부조에 의한 생계급여에 의존하여 근로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연구는 공공부조의 근로유인에 관한 이론으로 전개되어져 왔다. 비기여 무상급여라는 점에서 공공부조는 근로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주2)}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유경준·김대일(2002)은 노동패널 1999~2001년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률과 가구비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시간의 회귀분석을 한 뒤 구한 임금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의 계수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이상은(2004)은 노동패널 1998~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능력가구의 저학력자를 프로그램집단으로 구성하고 이중차이모델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업과 근로시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노동공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1년 또는 2년 동안의 단기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조의 근로유인에 관한 문제는 자활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만일 빈곤선 이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을 증대시키려는 수급자라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행 자활사업 제도권내에서는 별다른 인센티브를 찾기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안정적인 본인의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부담과 민간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불확실성을 안고도 자활사업으로부터 이탈 할 수도 있다. 물론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주1) 그러나 이런 부정적 통제수단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로 인해 불참자 1인 생계비만 감액하거나 여러 형태의 유예제도 등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주2) 정부의 소득보장정책과 이로 인한 빈곤계층의 복지의존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Murray(1984), Schiller(1995) 참조.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불참자 증대에 관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물론, 특히 자활사업 불참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의 성격, 제도의 특성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활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는 최근 들어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유태균(2003), 유태균·김경휘(2003), 이상록(2003), 이상록·진재문(2003)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을 대체로 인구학적 특성, 가족구성 특성, 인적자본 특성, 경제적 특성 등 객관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만, 유태균·김경휘(2003)는 객관적 요인들에 더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심리적요인과 사회적요인도 포함하여 실증분석 하고 있다.^{주3)} 그러나 자활사업 불참자의 특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활사업 불참자의 특성을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이 두 집단을 구분 짓게 하는 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자활사업 불참자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자활사업이 안고 있는 참여율 저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향후 성공적인 자활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2003 자활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에 대한 설문분석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3) 수급자들의 심리 및 태도 등 사회학적 측면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Edwards·Plotnick·Klawitter(2001), Kalil(2001) 참조.

제 2 절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의 사회·경제적 환경분석

1. 분석대상자들의 일반환경

본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03 자활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이다. 『2003 자활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실태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파악을 위해 전국 12개 시·도, 24개 시·군·구, 48개 읍·면·동에서 18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해당 읍·면·동에서 표본추출된 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방식이 사용되었다. 최종 조사완료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00가구이며, 근로능력가구 600가구, 근로무능력가구 700가구(중도탈락자 300가구, 신청탈락자 20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82명과 자활사업에 불참한 사람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7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자활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활불참자는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남·북 지역이 많으며, 불참자는 서울, 경기, 충북과 전남·북 지역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8〉 조사구 대분류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서울	17 (11.1)	6 (7.3)	11 (15.5)
부산	11 (7.2)	8 (9.8)	3 (4.2)
대구	4 (2.6)	3 (3.7)	1 (1.4)
광주	15 (9.8)	12 (14.6)	3 (4.2)
경기	14 (9.2)	5 (6.1)	9 (12.7)
강원	4 (2.6)	4 (4.9)	0 (0.0)
충북	6 (3.9)	2 (2.4)	4 (5.6)
전북	27 (17.6)	10 (12.2)	17 (23.9)
전남	27 (17.6)	11 (13.4)	16 (22.5)
경북	13 (8.5)	10 (12.2)	3 (4.2)
경남	9 (5.9)	8 (9.8)	1 (1.4)
제주	6 (3.9)	3 (3.7)	3 (4.2)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성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약 6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로 나누어 보면 그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0% 이상인 반면, 자활사업 불참자의 경우는 남녀 차이가 매우 근소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건부수급자 중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남성들이 자활사업에 불참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9〉 조사대상자 성별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남자	58 (37.9)	24 (29.3)	34 (47.9)
여자	95 (62.1)	58 (70.7)	37 (52.1)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1인 단독가구나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가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표 90> 에서 보듯이 자활불참자에 비해 자활참여자의 동거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구원 중에 어느 한사람이 큰 질병에 걸리는 등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활동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빈곤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표 90> 조사대상자 가구원수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1인	20 (13.1)	16 (19.5)	4 (5.6)
2인	38 (24.8)	26 (31.7)	12 (16.9)
3인	41 (26.8)	18 (22.0)	23 (32.4)
4인	22 (14.4)	12 (14.6)	10 (14.1)
5인	22 (14.4)	7 (8.5)	15 (21.1)
6인	10 (6.5)	3 (3.7)	7 (9.9)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다음으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49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볼 때 자활참여의 경우는 연령층이 높은 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자활불참의 경우는 연령층이 낮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활참여의 경우에는 분포 연령대가 40, 50, 60대 순으로 많은 반면, 자활불참의 경우에는 40대, 50대 다음이 20대와 30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평균연령에서 자활사업 불참자는 참여자에 비해 6년이 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활사업이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열악한 고령의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젊고 직업능력개발이 용이한 20~30대 중심의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대상자' 자활사업은 참여율이 저조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비취업 대상자' 중심 자활사업의 참여율이 높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1〉 조사대상자 연령분포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10~19세	3 (2.0)	1 (1.2)	2 (2.8)
20~29세	10 (6.5)	1 (1.2)	9 (12.7)
30~39세	17 (11.1)	8 (9.8)	9 (12.7)
40~49세	64 (41.8)	36 (43.9)	28 (39.4)
50~59세	43 (28.1)	24 (29.3)	19 (26.8)
60~69세	16 (10.5)	12 (14.6)	4 (5.6)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평균연령	48세	51세	45세

한편, 수급가구 가구원들은 근로능력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표 92〉에서 보듯이 자활참여자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약 22% 수준이며, 자활불참자의 경우는 이보다는 나아 고졸 이상의 비율이 약 32%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과 소득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여겨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료만으로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지, 아니면 소득수준이 낮아 배울 기회가 부족했는지 그 인과관계까지는 알 수 없다.

〈표 92〉 조사대상자 교육수준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무학	24 (15.7)	16 (19.5)	8 (11.3)
초등학교	61 (39.9)	35 (42.7)	26 (36.6)
중학교	27 (17.6)	13 (15.9)	14 (19.7)
고등학교	35 (22.9)	16 (19.5)	19 (26.8)
전문대학교	3 (2.0)	1 (1.2)	2 (2.8)
대학교	3 (2.0)	1 (1.2)	2 (2.8)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주: 각각의 학력은 재학, 졸업, 중퇴(수료) 등을 포함함.

수급가구 근로능력자들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시고용은 매우 적은 반면에 임시고용, 일용직, 자영업,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활불참의 경우에도 비록 이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민간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시고용과 같은 안정적 취업은 매우 드물며, 거의 대부분 일용직과 같은 열악한 조건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 조사대상자 취업상태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상시고용직	6 (3.9)	0 (0.0)	6 (8.5)
임시고용직	7 (4.6)	1 (1.2)	6 (8.5)
일용직	41 (26.8)	1 (1.2)	40 (56.3)
자영업자	19 (12.4)	0 (0.0)	19 (26.8)
비경제활동인구	1 (0.7)	1 (1.2)	0 (0.0)
자활사업·공공근로	79 (51.6)	79 (96.3)	0 (0.0)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수급자들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자활참여자과 자활불참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활참여자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약 37만원으로 자활불참자 중 임금근로자의 약 49만원, 비임금근로자의 약 45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즉, 자활사업 불참자들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는 많은 소득을 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4〉 취업형태별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자활사업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30만원 미만	28 (34.6)	12 (23.1)	8 (42.1)
30~60만원	51 (62.2)	24 (46.2)	8 (42.1)
61~90만원	2 (2.4)	14 (26.9)	1 (5.3)
91~120만원	0 (0.0)	2 (3.8)	0 (0.0)
121~150만원	0 (0.0)	0 (0.0)	2 (10.5)
150만원 이상	0 (0.0)	0 (0.0)	0 (0.0)
평균(만원)	37.07	48.71	44.61
계	81 (100.0)	52 (100.0)	19 (100.0)

주: 1) 무응답자 제외

2) 비임금근로의 월평균 소득은 월평균 순수익의 평균임.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이외 다른 근로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생계비 감액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아예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수급가구별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61~90만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30~60만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자활참여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31~60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이 61~90만원으로 평균소득은 약 69.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자활불참 가구는 61~90만원 다음으로 91~120만원으로 나타나 자활참여보다 소득이 높은 층이 많았으며, 특히 151만원 이상도 무려 14.1%나 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평균소득 역시 약 96.6만원으로 자활참여에 비해 약 27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5〉 지난 1년간 가구 월평균소득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30만원 미만	11 (7.2)	7 (8.5)	4 (5.6)
30~60만원	39 (25.5)	30 (36.6)	9 (12.7)
61~90만원	51 (33.3)	27 (32.9)	24 (33.8)
91~120만원	34 (22.2)	15 (18.3)	19 (26.8)
121~150만원	6 (3.9)	1 (1.2)	5 (7.0)
151만원 이상	12 (7.8)	2 (2.4)	10 (14.1)
평균(만원)	82.24	69.79	96.61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주: 1) 개인별 소득이 아닌 수급가구별 소득을 나타냄.
2)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총소득임.

한 달간 가구가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30~6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61~90만원, 91~120만원 순으로 답하여 평균 78.6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자활참여 가구의 평균비용은 72.3만원인데 비하여 자활불참 가구의 평균비용은 이보다 약 14만원이 많은 85.9만원 수준이었다. 이것은 자활불참자의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활불참 가구의 지출비용에 대한 기대치가 자활참여 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6〉 한 달간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30만원 미만	2 (1.3)	2 (2.4)	0 (0.0)
30~60만원	68 (44.4)	41 (50.0)	27 (38.0)
61~90만원	43 (28.1)	21 (25.6)	22 (31.0)
91~120만원	23 (15.0)	12 (14.6)	11 (15.5)
121~150만원	12 (7.8)	4 (4.9)	8 (11.3)
151만원 이상	5 (3.3)	2 (2.4)	3 (4.2)
평균(만원)	78.59	72.30	85.85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그렇다면 수급가구들의 실제 월평균 지출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자활참여의 경우는 30~60만원, 61~90만원, 91~120만원 순이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67.5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자활불참의 경우에는 61~90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60만원, 91~120만원 순이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자활참여에 비해 무려 20만원 정도 많은 약 88.1만원이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본인이 생각하는 한 달간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자활불참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지출액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7〉 지난 1년간 월평균 지출액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30만원 미만	3 (2.0)	3 (3.7)	0 (0.0)
30~60만원	61 (39.9)	40 (48.8)	21 (29.6)
61~90만원	44 (28.8)	22 (26.8)	22 (31.0)
91~120만원	32 (20.9)	14 (17.1)	18 (25.4)
121~150만원	10 (6.5)	3 (3.7)	7 (9.9)
151만원 이상	3 (2.0)	0 (0.0)	3 (4.2)
평균(만원)	77.06	67.48	88.13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주: 1) 개인별 소득이 아닌 수급가구별 소득을 나타냄.
 2)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금액임.

한편, 수급가구별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자활참여 가구는 평균 약 1462만원인데 비하여 자활불참 가구는 이보다 약 1300만원이 많은 약 2796만원으로 나타났다. 자활불참의 경우 이와 같은 큰 부채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민간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한 이유로 추정할 수 있겠다.

〈표 98〉 가구 부채규모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100만원 미만	1 (1.0)	0 (0.0)	1 (2.2)
100~500만원	28 (28.0)	17 (30.9)	11 (24.4)
501~1000만원	25 (25.0)	16 (29.1)	9 (20.0)
1001~3,000만원	32 (32.0)	17 (30.9)	15 (33.3)
3001만원 이상	14 (14.0)	5 (9.1)	9 (20.0)
평균(만원)	2,062.05	1,461.45	2,796.11
계	100 (100.0)	55 (100.0)	45 (100.0)

주: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명이었음.

수급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지급은 기본적으로 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부분을 보충하여 급여하는 방식이며, 이로 인하여 근로유인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선진국에서는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수급가구원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은 ‘일을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정부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 지원금액이 많아져, 결국 귀 가구가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이 같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이 일하거나, 일이 더 주어지면 하겠다고 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생계급여지급이 근로유인에 부정적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제도시행 경과기간이 아직은 짧아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정부의 지원금이 가계경제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떤 형태로든 추가 소득을 위한 일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주4)}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활사업 불참자들을 볼 때, 이러한 응답은 단지 보충급여방식이 우리나라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있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일 뿐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에 의한 근로동기 감퇴 문제는

주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 저소득층들의 노동공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있다. 이상은(2004) 참조.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99〉 보충급여방식 근로유인

(단위: 명, %)

	전체	자활참여자	자활불참자
일을 전혀 하지 않겠다	8 (5.2)	2 (2.4)	6 (8.5)
하고 있는 일을 줄이겠다	2 (1.3)	2 (2.4)	0 (0.0)
현재와 같이 일을 하겠다	62 (42.5)	33 (40.2)	32 (45.1)
하고 있는 일을 늘리겠다	16 (10.5)	11 (13.4)	5 (7.0)
일이 더 주어진다면 하겠다	62 (40.5)	34 (41.5)	28 (38.4)
계	153 (100.0)	82 (100.0)	71 (100.0)

제 3 절 자활사업 참여결정 요인분석 및 불참자의 민간시장소득 추정분석

1. 계량분석의 목적 및 자료설명

계량분석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조건부수급자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 민간시장에서 소득활동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 그들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자활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민간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얻는 소득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가정으로 전제하고 있다. 즉,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정수준(생계비 한도)의 소득이 보장되지만, 만일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민간시장에 참여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대신 자활사업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자활사업 참여가 아닌 민간시장을 택한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이들의 소득수준을 추정하고,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두 번째 분석의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앞장의 설문분석에서와 같이 『2003 자활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실태조사』 자료에서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참여자 82명, 그리고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형태로 자활사업에 불참한 71명 등 총 15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00〉 분석대상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206명 전체)

변수명	Mean	Std. Dev.	Min	Max
자활참여	.535	.500	0	1
지역	.183	.387	0	1
성별	1.37	.485	1	2
가구원수	3.12	1.47	1	8
연령	41.1	11.10	20	64
교육수준	3.61	1.20	2	7
월소득	83.3	42.81	14	214
최저지출	78.98	39.39	20	250
부채	1,368	2,641	0	20,000
이전소득	30.60	68.76	0	600
실질소득	67.64	46.08	-3	210
근로소득	75.52	32.08	7	150
의료비	37.7	52.8	0	400
소득기준인지도	1.69	.462	1	2
공무원인지도	2.26	1.02	1	5
급여삭감	1.84	.358	1	2
보충급여인지도	1.43	0.496	1	2

주: 소득관련변수의 단위는 만원임.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참여자와 불참자간 비교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총 17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활참여’는 자활사업 참여여부를 나타내며 참여한 경우 1,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지역’은 수급자의 거주

지역으로 조사대상지역은 앞의 〈표 100〉과 같이 전국이지만 분석의 목적상 서울과 부산을 1, 기타지역을 0으로 구분하였다. 전국을 이렇게 두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서울과 부산은 자활사업의 민간부문의 고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가정한 것이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2로 처리하였다. ‘가구원수’는 수급자의 가구원 수를, ‘연령’은 수급자의 나이, ‘교육수준’은 수급자의 교육수준을 1:미취학, 2:무학, 3:초등학교, 4: 중학교, 5:고등학교, 6:전문대, 7:대학교, 8:대학원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월소득’은 지난 1년간 수급자의 가구 월평균소득을, ‘최저지출’은 한 달간 수급자 가구가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출금액을, ‘부채’는 가구당 부채규모를 말한다. ‘이전소득’은 가구당 사적이전소득의 총액, ‘실질소득’은 월가구총소득에서 월생계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은 자활사업 불참자로 임금근로나 비임금근로 등을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나타내며, ‘의료비’는 월의료비 지출금액이다.

그리고 ‘소득기준인지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기준상한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변수로 알고 있는 경우 1, 알고 있지 못한 경우 2로 처리하였다. ‘공무원인지도’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문한 내용으로 1:정확하게 알고 있다, 2: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다, 3:대충알고 있다, 4:잘 모르고 있다, 5:전혀 모르고 있다 등으로 처리하였다. ‘급여삭감’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삭감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1: 삭감경험이 있다, 2: 삭감경험이 없다 로 구분된다. ‘보충급여인지도’는 조사대상자가 보충급여의 지급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알고 있는 경우 1, 알고 있지 못한 경우 2로 처리하였다.

〈표 101〉 자활참여자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82명)

변수명	Mean	Std. Dev.	Min	Max
지역	.170	.378	0	1
성별	1.29	.457	1	2
가구원수	2.71	1.36	1	6
연령	50.8	9.0	20	64
교육수준	3.43	1.12	2	7
월소득	69.79	32.76	14	206
최저지출	72.30	35.63	20	200
부채	1461.45	1474	0	8000
이전소득	26.91	52.21	0	208
실질소득	51.56	33.29	-3	202
의료비	39.92	58.47	0	400
소득기준인지도	1.65	.477	1	2
공무원인지도	2.02	1.00	1	5
급여삭감	1.87	.329	1	2
보충급여인지도	1.46	0.501	1	2

주: 소득관련변수의 단위는 만원임.

〈표 101〉은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특성이며, 〈표 102〉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앞장의 설문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가구원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특히 소득과 관련한 경제학적 특성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활불참자는 자활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으며, 연령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관련 변수에서도 자활참여자에 비해 금액이 높은 편이며, 표준편차 역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2> 자활불참자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71가구)

변수명	Mean	Std. Dev.	Min	Max
지역	.197	.400	0	1
성별	1.46	.502	1	2
가구원수	3.59	1.45	1	8
연령	44.84	12.33	20	64
교육수준	3.81	1.26	2	7
월소득	96.61	47.72	22	214
최저지출	85.85	42.28	30	250
부채	2796.11	3501	0	20000
이전소득	34.87	84.13	0	600
실질소득	86.22	51.73	4	210
근로소득	48.40	29.06	7	150
의료비	35.19	45.79	0	300
소득기준인지도	1.73	.445	1	2
공무원인지도	2.54	0.982	1	5
급여삭감	1.81	.389	1	2
보충급여인지도	1.39	0.492	1	2

주: 소득관련변수의 단위는 만원임.

2.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일한 조건부수급자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안정된 소득을 원할 수도 있고, 혹은 소득은 불확실하지만 자활사업 참여대신 다른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조건부수급자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생계급여가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은 생계급여 삭감이상의 기대수익 또는 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표 101>과 <표 10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활사업 불참자들의 소득수준이 참여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반면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

우선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Probit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활사업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자활참여’가 사용되었고 참여한 경우 1,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이 된다. <표 103>은 Probit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정식 (1)은 거주지역 과 수급자의 연령을 별도의 변수로 추정 한 것이고, 추정식 (2)는 거주지역과 성별, 거주지역과 연령, 그리고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을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여 ‘지역_성별’, ‘지역_연령’, ‘지역-교육’ 이라는 새로운 변수형태로 만든 경우이다.

<표 103> 자활참여 결정요인 Probit 추정식

변수명	추정식 (1)			추정식 (2)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자활참여 (1:참여, 0:불참)						
지역_성별	-	-	-	-1.05	.5719	-1.848
지역_연령	-	-	-	.0066	.0208	.317
지역_교육	-	-	-	-1.196	.1693	-7.06
지역	.0431	.3016	0.143	-	-	-
성별	-.6318	.2487	-2.540	-	-	-
연령	.0314	.0152	2.062	-	-	-
교육수준	-.0001	.1292	-.001	-	-	-
가구원수	-.1761	.1099	-1.603	-.2898	.1010	-2.869
최저지출	.0024	.0042	0.565	.0018	.0042	0.444
부채	-.00008	.00005	-1.564	-.00008	.00005	-1.57
이전소득	-.0008	.0017	-.468	-.00047	.0016	-.296
소득기준 인지도	-.4292	.3055	-1.405	-.3504	.2854	-1.228
공무원 인지도	-.3270	.1167	-2.802	-.3037	.1147	-2.647
급여삭감	.2776	.3379	.822	.2521	.3220	0.783
보충급여 인지도	.3123	.2554	1.223	.2127	.2398	0.887
_cons	-1.4171	1.7802	-0.796	1.482	.9059	1.636
	Number of obs = 153 LR chi2(9) = 40.63 Prob>chi2 = 0.0001			Number of obs = 153 LR chi2(9) = 29.29 Prob>chi2 = 0.0020		
	Log likelihood = -85.34 Pseudo R ² = 0.1923			Log likelihood = -91.01 Pseudo R ² = 0.1386		

추정식 (1)의 결과를 볼 때 ‘성별’, ‘연령’, ‘공무원인지도’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과약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식 (2)의 결과에서 거주지역과 성별, 거주지역과 연령,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을 한 변수로 통합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교육수준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추정식 (2)에서는 ‘가구원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의미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추정식 (2)에서도 (1)에서와 같이 수급자들의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인식변수로 ‘공무원인지도’가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당공무원들이 수급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과약이 확실하게 된다고 믿는다는 것은 소득상한선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인해 생계급여비가 삭감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소득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위해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3. 자활사업 불참자의 소득추정식

계량분석의 두 번째 목적은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민간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한 사람들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자활사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자활사업 불참자 71명은 민간시장에서 근로 또는 비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활사업 참여자는 민간시장 소

득이 없는 사람들이다. <표 102> 에 의하면 자활사업 불참자는 평균 48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민간시장에서의 소득활동을 선택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추정소득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자활사업 불참자의 소득추정식을 추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4> 자활사업 불참자의 민간소득 추정식

변수명	추정식 (3) 종속변수: ln(근로소득)			추정식 (4) 종속변수: 근로소득		
	Coef.	Std. Err.	t	Coef.	Std. Err.	t
지역_성별	-	-	-	16.29	12.19	1.336
지역_연령	-	-	-	.5125	.4282	-1.197
지역_교육	-	-	-	-1.5636	5.5869	-.280
지역	-.1941	.2033	-.955	-	-	-
성별	.28883	.1479	1.948	-	-	-
연령	-.0092	.0080	-1.149	-	-	-
가구원수	-.8375	.0684	-1.224	-3.082	2.777	-1.110
최저지출	.0085	.0027	3.114	.4512	.1176	3.863
부채	-.00003	.00006	-0.643	-.0015	.0009	-1.658
이전소득	.00018	.0008	.210	.0056	.0371	.151
소득기준인지도	-.0319	.2051	-.156	-5.040	8.453	-0.596
공무원인지도	.0021	.0785	0268	-2.500	3.3079	-0.756
급여삭감	.1590	.1908	.833	6.2790	7.943	.790
_cons	3.563	.9865	3.612	27.36	25.76	1.062
	Number of obs = 71			Number of obs = 71		
	F (11, 59) = 3.00			F (7, 116) = 3.64		
	Prob > F = 0.0031			Prob > F = 0.0008		
	R-squared = 0.3590			R-squared = 0.3776		
	Adj R-squared = 0.2395			Adj R-squared = 0.2739		
	Root MSE = .5796			Root MSE = 24.762		
	y, predicted =3.68			y, predicted =48.40		

추정식 (3)은 종속변수인 민간시장 소득을 로그화한 것이고, 추정식 (4)는 민간시장 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이다. 두 추정식 모두 ‘최저지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근근히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커질수록 민간시장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민간시장에서의 소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추정소득은 평균 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자활사업 불참자의 소득추정식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간 사회·경제적배경이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자활참여자도 불참자와 같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도 있으나 개인의 선호 등으로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자활사업 불참자가 일반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민간시장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경제적변수의 추정오차까지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자활불참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데는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을 추정해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활참여와 불참을 결정짓는 probit 모형의 오차항과 불참자의 소득추정식의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일반회귀분석을 통한 소득추정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Heckman Selection Model의 내용이다.

$$Y_j = X_j\beta + U_{ij} \quad : \text{regression equation}$$

$$Z_i\gamma + u_{2j} > 0 \quad : \text{selection equation}$$

$$u_1 \sim N(0, \sigma)$$

$$u_2 \sim N(0, 1)$$

$$\text{corr}(u_1, u_2) = \rho$$

$$\rho \neq 0$$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사업 불참 민간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Heckman Selection Model(2-step)을 사용하여 <표 105> 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05> Heckman 2-step model 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민간시장 소득추정식

종속변수: 근로소득	추정식(5)			추정식(6)		
	Coef	Std.Err	z	Coef.	Std. Err.	z
지역_성별	-	-	-	-5.7298	75.28	-0.76
지역_연령	-	-	-	-.0440	1.803	-.024
지역_교육	-	-	-	.1705	14.77	.012
지역	-9.9854	13.7489	-.726	-	-	-
성별	9.0344	23.16	0.390	-	-	-
연령	-.0774	1.305	-0.059	-	-	-
교육수준	1.0735	5.801	.185	-	-	-
가구원수	-5.273	4.003	-1.317	-3.003	4.860	-.618
취저지출	.4914	.1422	3.454	.4833	.1714	2.820
부채	-.00212	.0026	-0.809	-.0031	.0062	-.512
이전소득	-.0037	.0626	-.0060	-.0169	.1139	-.149
공무원인지도	-4.6828	11.660	-0.402	-10.090	24.87	-.0409
급여삭감	8.565	10.362	.827	6.4829	11.32	.572
_cons	26.20	75.68	.346	67.99	170.52	.399
selelct						
지역_성별	-	-	-	-1.089	.5523	1.972
지역_연령	-	-	-	-.0227	.0157	-1.448
지역_교육	-	-	-	-.1266	.2206	-.574
지역	-.0770	.2936	-.262	-	-	-
성별	.7165	.2424	2.955	-	-	-
연령	-.040	.0136	-2.992	-	-	-
교육수준	-.0260	.1274	-.205	-	-	-
부채	.00009	.00005	1.745	.00009	.00004	1.908
이전소득	.00121	.00175	.691	.0012	.0016	.735
소득기준인지도	.4356	.2828	1.540	.2553	.2621	.974
공무원인지도	.3224	.1104	2.918	.3102	.1070	2.899
보충급여인지도	-.3050	.2531	-1.205	-.2448	.2375	-1.031
_cons	-.2410	1.242	-.194	-1.053	.5110	-2.062
mills lambda	-18.765	64.66	-.290	-37.24	132.06	-.282
rho	-.705			-.9847		
sigma	26.59			37.8207		

추정식 (5)에 따르면 자활사업에 참여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selection 모형에서는 성별, 연령 그리고 공무원인지도가 유의적인 변수로 분석되었다. 즉,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의해 소득과 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정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활사업 참여대신 민간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그러한 조건하에서 민간시장 소득은 ‘최저지출’, 즉,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출금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추정식 (6)에서는 지역과 성별을 통합한 변수 ‘지역_성별’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 부산거주 남성이 민간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소득수준은 추정식 (5)에서처럼 ‘최저지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6〉 조건부수급자의 민간시장 소득추정치

(단위: 만원)

추정모델	추정치 (OLS. predicted value)			기대치(y-expected) Heckman Selection (two-step)		
	Mean	Min	Max	Mean	Min	Max
OLS 추정식(3)	40	17.5	125			
OLS 추정식(4)	48	12.4	101			
Heckman (two-step) 추정식(5)				22.66	.86	81.9
Heckman (two-step) 추정식(6)				22.02	1.47	83.4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기대되는 소득은 월 22만원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활사업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보다 약 2배가 많은 48만원정도로 추정되나 이 금액은 조건부수급자 전체의 민간시장 소득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민간시장소득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Heckman (two-step) model로 추정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금액은 자활사업 불참자들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민간시장 소득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성립된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사업 불참자의 특성을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이 두 집단을 구분 짓게 하는 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건부수급자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자활사업이 안고 있는 참여율 저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향후 성공적인 자활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03 자활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부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자와 불참자에 대한 설문분석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분석결과를 자활사업 불참자와 참여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서 자활사업 불참자는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젊은 편이며, 동거 가구원수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자본 특성에서 자활사업 불참자는 참여자에 비해 학력 및 직업기술 수준이 높으며, 민간노동시장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셋째, 경제적 특성에서 자활사업 불참자는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평균 총소득은 약 38%, 월평균 지출액은 약 31%, 그리고 부채는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특성에서 자활사업 불참자는 참여자에 비해 특히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pr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의한 자신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믿는 정도가 강할수록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급자의 거주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 불참자의 소득 추정식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 가구가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클수록, 즉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민간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활사업 불참자들의 보다 정확한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Heckman selection model을 분석한 결과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의해 소득과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정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활사업 참여대신 민간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조건하에서 민간시장 소득은 수급자구가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출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지역과 성별을 통합한 설명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 부산거주 남성이 민간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소득수준은 수급자 가구가 근근이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 2004-25

기초보장수급가구 근로능력자의 소득활동관련 실태 및 문제점
The analysis on the motives to encourage participating
in the public self-reliance program

발행일	2004년 5월 일	값 5,000원
저 자	원 종 욱	
발행인	박 순 일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ISBN 89-8187-338-0 93330

저자약력

- 원 종 욱

미국Purdu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노동시장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공저)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공저